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제정 개정	1999. 4. 3.	부장결재	국심	6011-	220
	1999. 10. 30.	국장결재	국심	6011-	621
	2000. 7. 6.	국장결재	국심	6011-	294
	2001. 1. 5.	국장결재	국심	6011-	14
	2001. 7. 2.	국장결재	국심	6011-	229
	2002. 2. 15.	국장결재	국외	6011-	133
	2002. 3. 18.	국장결재	국심	6011-	115
	2002. 5. 14.	국장결재	국시	6011-	42
	2002. 7. 2.	국장결재	국심	6011-	303
	2003. 3. 28.	국장결재	국외	6011-	217
	2004. 1. 27.	국장결재	국시	6011-	14
	2004. 8. 27.	국장결재	국제	6011-	591
	2005. 6. 30.	국장결재	국심	6011-	386
	2005. 12. 29.	국장결재	국심	6011-	925
	2006. 2. 21.	국장결재	외환조사팀-		38
	2007. 2. 26.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153
	2007. 8. 1.	국장결재	국제기획팀-		1210
	2007. 10. 16.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774
	2007. 12. 17.	국장결재	국제기획팀-		2012
	2007. 12. 28.	국장결재	국제기획팀-		2103
	2008. 1. 17.	국장결재	국제기획팀-		94
	2008. 3. 20.	국장결재	국제기획팀-		482
	2008. 9. 10.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809
	2009. 3. 18.	국장결재	국제기획팀-		606
	2009. 9. 18.	국장결재	외환분석팀 -		356
	2009. 11. 20.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		1130
	2010. 8. 3.	국장결재	국제기획팀 -		1274
	2010. 12. 13.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		1484
	2011. 4. 5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		525
	2011. 6. 1	국장결재	국제총괄팀 -		580
	2011. 7. 15	국장결재	국제총괄팀 -		865
	2011. 9. 6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		1392
	2012. 4. 27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		553
	2012. 10. 18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		1222
	2012. 11. 28	국장결재	국제총괄팀 -		1758
	2013. 6. 28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		710
	2013. 9. 11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		964
	2014. 1. 20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		63
	2014. 12. 23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		1572
	2015. 1. 7	국장결재	외환시장팀 -		8
	2015. 6. 30	국장결재	외환시장팀 -		223
	2015. 12. 31	국장결재	외환시장팀 -		457
	2016. 1. 19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		61
	2016. 3. 31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		3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절차는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외국환은행 등

제2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이하 “ 「세

칙」"이라 한다)제2-2조에 따른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와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표 1> 「금융기관 외화대차대조표 작성요령」의 외화자산과 부채로 한다. 다만, 리스관련 외화자산과 부채는 1998.7.1.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한다.

2.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표 1> 「금융기관 외화대차대조표 작성요령」의 외국환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선물외화자산은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 매입분, 신용 및 기타 파생금융상품거래중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나. 선물외화부채는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 매도분, 신용 및 기타 파생금융상품거래중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통화옵션거래의 외국환포지션 산정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콜옵션 매입분 및 풋옵션 매도분은 선물외화자산으로, 콜옵션 매도분 및 풋옵션 매입분은 선물외화부채로 한다.

나. 동일날짜에 동일만기의 여러 개 통화옵션거래가 합성된 통화옵션거래를 동일한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실제로 발생하는 최대 외국환포지션만 계상한다.

제3조(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① 「세칙」 제2-3조제4항의 대미달러환율은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산정시 적용환율과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평균한 환율로 한다.

② 외국환포지션 한도산정시 미화 1천불미만은 절상한다.

제4조(별도한도의 인정신청) ① 「세칙」 제2-4조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별지 3>의 '종합(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를 한국은행 국제국장(이하 "국제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별도한도 인정신청중 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매년 결산일 1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당해회계년도 개시전일까지 통지한다.

제4조의2(대내외회사모사채) 「세칙」 제2-7조에 따른 "대내외회사모사채"는 국내에서 발행한 외회사모사채로서 외국환은행이 취득 또는 인수한 것을

말한다.

제4조의3(대출 및 외화채무증권 투자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 ① 시설자금의 대출 취급시에는 관계증빙서류 및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계획된 용도 및 시기에 맞추어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시설자금 지원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은행은 외화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1. 「세칙」 제2-9조에 따라 외화대출이 제한되는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2. 대출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조, 변조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외국환은행은 외화채무증권 발행자가 「세칙」 제2-10조에 따라 외화채무증권 매입이 제한되는 용도로 발행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외화채무권을 지체없이 매각하여야 한다.

④ 외국환은행은 대출 또는 외화채무증권 투자 이후 차주 또는 외화채무증권 발행자로부터 대출금 또는 발행자금 사용내용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4조의4(시장조성자 자격 요건) 「세칙」 제2-31조제1항의 시장조성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준수 요건 : 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재무건전성 요건 :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및 신용등급 BBB(S&P 기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것

제4조의5(지정 절차) ① <별지 4>의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 등이 포함된 차기 시장조성자 지정 계획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② 「세칙」 제2-31조제2항의 시장조성능력은 거래실적 등 정량적 평가와 업무협조도 등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③ 시장조성자는 제2항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국장이 지정한다.

제4조의6(호가제시 의무) ① 「세칙」 제2-32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호가제시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속적 호가 : 직거래 환율 매도 및 매수 호가는 각각 1개 이상씩 상시 유지. 다만, 거래체결 후 또는 호가취소 후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호

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호가를 상시 유지한 것으로 봄

2. 경쟁적 호가 : 직거래 환율 호가의 매도·매입 스프레드는 달러화를 매개로 한 재정환율의 최우선 매도·매입 스프레드의 일정 배수 이내로 유지

② 제1항의 일정 시간 및 일정 배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의7(지정 취소 등 절차) ① 「세칙」 제2-33조에 따라 시장조성자 지정을 취소할 경우 해당 시장조성자에게 취소 사유 및 취소 예정일자(긴급한 사유가 없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5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한다)가 기재된 서면으로 이를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조성자는 취소 예정일까지 국제국장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4장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9조(실지검사) 「세칙」 제4-6조에 따라 국제국장이 실지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3>의 '검사 실시명령서'를 검사원에게 발급하고 검사원은 검사 착수시 외국환중개회사의 대표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사항)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납입자본금 충족 여부
2.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지식·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불공정 중개업무 여부
5. 자기명의 거래 여부
6.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 고시의 적정성 여부

7. 기타 외국환거래법령, 규정 및 세칙의 준수 여부

제11조(검사일지 작성 및 확인서 등 징구) ① 검사원은 검사기간 중 <별지 3>의 '검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검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내용에 대한 <별지 3>의 '경위서', '확인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

제12조(검사결과 보고) 검사원은 검사 실시 후 <별지 3>의 '외국환중개회사 업무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세칙」 제4·7조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할 때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제재심의위원회는 국제국 부국장, 외환시장팀장, 국제총괄팀장, 외환건전성조사팀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12조의3(제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안을 심의할 때 위법행위의 중대성, 고의 및 과실의 정도, 시정조치를 위한 노력 여부, 징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

② 외환시장팀장은 제1항의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심의내용을 기록·유지한다.

제12조의4(검사결과 등 통보) 국제국장은 검사결과 및 「세칙」 제4·7조에 따른 제재 등 조치내용을 외국환중개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외국환거래 신고등

제1절 신고등의 신청 및 접수

제13조(신고등의 신청) ① 「세칙」 제5장의 허가, 신고수리 또는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행위 또는 거래에 관한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거나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신고등의 신청인은 <별지 1>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서의 접수) ① 신고등의 신청서는 신고등의 종류별로 신청순서에 따라 외국환거래 신고등 접수·처리부(이하 "접수·처리부"라 한다)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기획 및 조정

에 관한 규정 시행절차」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신고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의 경미한 하자 등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

제15조(신청서의 보완) ① 접수한 신청서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 구두,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통신 등으로 보완이나 보정(이하 “보완”이라 한다)을 요청하여야 하며 접수·처리부에 보완요청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류의 보완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서류의 보완을 하지 않거나 반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할 수 있다.

제2절 신고등의 처리절차

제16조(처리기준) 「세칙」 제5-3조에 따른 신고등의 항목별 세부심사기준, 전결(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분, 처리기간 및 위임지역본부 등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17조(전결구분의 공통사항) ① 팀 조직이 없는 지역본부의 경우 <별표 2>의 전결구분중 팀장 전결은 부분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본부장 보충 선임자 전결로 한다.

② 신고등에 대한 내용변경의 전결권 구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액, 거래당사자 변경 등 주요내용 변경시 신규 신고등과 동일
2. 계약기간 연장 등 기타 경미한 내용변경시 신고등 항목별 하위 전결권자

제18조(허가서등의 교부) ① 제13조에 따라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접수·처리부에 기재한 후 허가서, 신고수리서 또는 신고증(이하 “허가서등”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등을 받은 자가 허가서등에 표기된 금액, 기타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서등을 무효로 한다.

③ 이 장에 따른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계약서 등 주요서류 원본에 신고등의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유효기간) 허가서, 신고수리서, 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다만, L/C 추심 등에 소요 되는 기간이 이를 초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관리 등) ① 국제국장 및 각 지역본부장은 신고등의 처리내역을 외환 전산망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신고등의 처리내역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외환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절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제21조(사후관리 주체 및 대상) ① 「세칙」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는 외국 환거래의 신고등의 업무를 처리한 국제국장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각 지역본부장이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등을 한 외국환거래가 법령의 규정대로 실행되었는지 여부 및 신고등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2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외국환거래 당사자는 국제국장 또는 각 지역본부장이 요구하는 경우 사후관리에 필요한 외국환거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거래 당사자는 국제국장 및 각 지역본부장이 사후관리업무 수행 시 거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위규사항 통보 등) ① 국제국장 및 각 지역본부장은 외국환거래 신고 등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를 담당하는 기관에 동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각 지역본부장이 제1항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제국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6장 외국환거래 검사

제24조(검사반의 구성 및 임무) ① 「세칙」 제6-2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공동검사를 요구한 경우 외환조사팀장은 금융감독원과 검사원 구성, 검사 일수 등 검사 세부계획을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검사 계획 수립시 검사반은 국제국 소속 직원인 검사반장 1명과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반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원의 통할 및 업무분장
2. 검사결과 보고서 작성
3. 외환거래 정보의 수집
4. 금융감독원 검사원과의 업무협조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반장은 공동검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국제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공동검사 실시) ① 「세칙」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공동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3> 제5-1호 서식의 '외환거래 공동검사 실시 명령서'를 검사원에게 발급하고 검사원은 이를 검사착수시 피검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세칙」 제6-3조제3항제1호의 중점 검사대상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은 <별지 3> 제5-4호 및 제5-5호에 따른다.

1. 확인서 : 중점 검사대상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며,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이 기술되어야 한다.
2. 질의서 : 중점 검사대상거래의 내용이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사실확인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6하원칙에 따라 질의응답식으로 작성한다.
3. 의견서 : 중점 검사대상거래의 정황과악이 필요하거나 검사대상자의 정황설명이나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요구한다.
4. 지급등의 증빙서류 및 관련문서 : 중점 검사대상거래에 대한 사실의 객관적 자료로서 사본인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관 책임자가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검사원은 검사기간 중 <별지 3> 제5-2호 서식의 '검사일지' 및 제5-3호 서식의 '검사원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검사결과 사후관리) 검사결과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와 시정조치결과 보고서의 서식은 각각 <별지 3> 제5-6호와 제5-7호와 같다.

제7장 외국환거래 보고대상자에 대한 검사

제27조(검사사항) 「세칙」 제7-1조에 따른 검사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

국환거래 당사자의 보고사항을 검사한다.

제28조(검사자료의 제출) 피검사자는 국제국장이 요구하는 경우 외국환거래 보고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검사절차) ① 「세칙」 제7-1조에 따른 실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3> 제6-1호 서식의 '검사 실시 명령서'를 검사원에게 발급하고 검사원은 이를 검사착수시 피검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세칙」 제7-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은 <별지 3> 제6-2호 또는 제6-3호 서식에 의한다.

1. 확인서 : 검사대상 보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또는 위규여부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요구하며,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이 기술되어야 한다.
2. 질의서 : 검사대상 보고내용 또는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복잡하거나 불분명하여 관련내용의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요구하며, 6하원칙에 따라 질의응답식으로 작성한다.

제30조(제재등) ① 검사결과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세칙」 제7-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행할 때는 외환거래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외환거래심의위원회는 외환건전성조사팀장, 국제총괄팀장, 외환심사팀장, 외환시장팀장, 자본이동분석팀장, 외환정보팀장으로 구성한다.

제8장 보고 등

제31조(보고서 등) ① 「세칙」 제8-1조에 따라 보고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전산매체 등의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2>와 같다. 다만, 제2항 단서의 방법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0-14조에서 규정한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 보고서에 따른다.

② 보고당사자는 제1항의 보고서를 국제국장 및 각 지역본부장앞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환정보집중기관에 보고서 제출을 의뢰한 경우에는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규정」, 「세칙」 및 이 절차의 시행에 필요한 제 서식은 <별지 3>과 같다.

제32조(지방소재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포지션 상황보고서 제출처) 본점(외국은 행지점의 경우에는 대표지점)이 지방에 소재하는 본점인 외국환은행의 장은 <별지 2>의 외국환포지션 상황보고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대미화 환산율) ① 보고당사자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미화 이외 통화를 미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매일 산출한 외국통화의 대미화 환율을 적용한다.

1. 위안화 : 위안화의 대미화 환산율 = $\frac{\text{위안화의 매매기준율(원화표시)}}{\text{미화의 매매기준율(원화표시)}}$

2. 「세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 통보하는 통화 :

당해통화의 대미화 환산율 = $\frac{\text{당해통화의 재정된매매기준율(원화표시)}}{\text{미화의 매매기준율(원화표시)}}$

3. 기타통화 : 각 행에서 입수가능한 최근일의 대미화 환율

② 제1항에 따른 대미화 환산율은 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이 때 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 통화는 100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34조(비본의 보관) 제31조의 보고당사자는 보고서의 비본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외화대차대조표) 「세칙」 제8-1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이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는 외화대차대조표는 <별표 1>의 「금융기관 외화대차대조표 작성요령」에 따른다.

부 칙 <1999. 4. 3>

① (시행일) 이 절차는 1999. 4. 1.부터 시행한다.

② (외국환관리업무취급절차의 폐지) 「외국환관리업무취급절차」는 이 절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중 략)

부 칙 <2008. 3. 20>

① (시행일) 2008. 3.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한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8월 10일 이전에 행한 외화대출중 「세칙」 제2-9조에 해당하는 외화대출로서 만기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외화대출의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간 「세칙」 제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08. 9. 10〉

이 절차는 200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8〉

이 절차는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18〉

이 절차는 200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26〉

이 절차는 200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3〉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1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금융기관 외화대차대조표 작성요령', <별지 2> '가.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보고서' 중 '중소제조업체 국내시설자금 대출한도액 운용 보고서' 및 '나. 외환통계 보고서'는 201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 제4조제1항에 따른 별도한도 인정신청중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0-14호)의 고시전 거래로 인한 한도초과분에 대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별도한도를 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이 절차 시행 15일전까지 통지한다.

② 제1항의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외국환은행은 별도한도 인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정기간 종료일 1개월전까지 별도한도를 재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 인정여부를 인정기간 종료 15일전까지 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외국환은행은 자기자본 변동으로 별도한도 증감이 발생할 경우 자기자본이 변동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별도한도를 재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의 증감여부를 재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통지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거래 중 만기기도래한 거래는 만기일이 속한 분기말에 별도한도에서 제외된다.

⑤ 제1조 및 이 절차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한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를 최초로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별도한도를 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이 절차 시행 15일전까지 통지한다.

부 칙 〈2010. 12. 13〉

이 절차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5〉

이 절차는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1〉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 제4조제1항의 별도한도 인정신청 중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조치와 관련하여 2011년 6월 1일 전 거래로 인한 한도초과분에 대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2011년 6월 10일까지 별도한도를 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2011년 6월 24일까지 통지한다.

② 제1항의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외국환은행은 별도한도 인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정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한도를 재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 인정여부를 인정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외국환은행은 자기자본 변동으로 별도한도 증감이 발생할 경우 자기자본이 변동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별도한도를 재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의 증감여부를 재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거래 중 만기가 도래한 거래는 만기일이 속한 분기말에 별도한도에서 제외된다.

부 칙 〈2011. 7. 15〉

이 절차는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6〉

이 절차는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7〉

이 절차는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18〉

이 절차는 201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8〉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 제4조제1항의 별도한도 인정신청 중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을 위한 통첩 시행(2012년 11월 28일)과 관련하여 2012년 11월 28일 전 거래로 인한 한도초과분에 대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2012년 12월 14일까지 별도한도를 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2012년 12월 21일까지 통지한다.

② 제1항의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외국환은행은 별도한도 인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정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한도를 재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 인정여부를 인정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외국환은행은 자기자본 변동으로 별도한도 증감이 발생할 경우 자기자본이 변동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별도한도를 재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의 증감여부를 재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거래 중 만기가 도래한 거래는 만기일이 속한 분기말에 별도한도에서 제외된다.

부 칙 〈2013. 6. 28〉

이 절차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1〉

이 절차는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20〉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대상 대이란 교역 등의 적용 유예) <별표 2-2>‘금지대상 대이란 교역·투자 및 해외건설 활동’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은 2014년 1월 20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다만, 한국무역협회의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부 칙 〈2014. 12. 23〉

이 절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7〉

이 절차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30〉

이 절차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31〉

이 절차는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19〉

이 절차는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31〉

이 절차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융기관 외화대차대조표 작성요령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화대차대조표에 포함될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I. 외화자산계정

1. 외국통화
2. 외화예치금
 21. 외화타점예치금
 22. 외화정기예치금
 23. 외화기타예치금
3. 외화증권
 31. 주식
 32. 채권
 33. 외화수익증권
4. 외화대여유가증권
5. 매입외환
 51. 수출환어음
 511. 일람출급
 512. 기한부
 52.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
 53. 약속어음(P-Note)
 54. 기타
6. 미결제외환
7. 외화대출금
 71. 외화대출
 72. 외화표시원화대출
 73. 전대차관자금대출
 731. 금융기관전대
 732. 민간기업대출
 733. 기타전대대출
8. 은행간외화대출
 81. 외화타점대
 82. 외화콜론
 83. 은행간외화대여금
9. 외화사모사채
10. 내국수입유산스

- 101. 국내본점
 - 102. 해외지점
 - 103. 해외은행
 - 104. 타외국환은행
 - 마) 기타
 - 11. 외화리스자산
 - 111. 외화운용리스
 - 112. 외화선급운용리스
 - 113. 외화금융리스
 - 114. 외화선급금융리스
 - 115. 기타
 - 12. 외화신용카드채권
 - 121. 신용카드대급금
 - 122. 기타
 - 13. 외화직불카드채권
 - 14.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 15. 외화본지점
 - 151. 국내본지점
 - 152. 국외본지점
 - 1521. 집계정
 - 15211. 갑갑계정
 - 15212. 갑을계정
 - 1522. 을계정
16. 국외고정자산
17. 기타외화자산
 - 171. 외화미수금
 - 172. 외화미수수익
 - 173. 외화가지급금
 - 174. 외화선급비용
 - 175.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 176. 기타
 - 1761. 자본조정[참조항목]
 - 1762. 기타
18.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수
19. 외화수출팩토링채권
20. 외화출자전환채권
21. 외화파생상품자산
 - 211. 이자율관련

- 212. 통화관련
- 213. 주식관련
- 214. 신용관련
- 215. 기타파생상품자산
- 22. 역외외화자산
 - 221. 역외외화예치금
 - 2211. 비거주자
 - 2212. 타역외계정
 - 222. 역외외화대출금
 - 2221. 비거주자
 - 2222. 타역외계정
 - 223. 역외외화증권
 - 2231. 주식
 - 2232. 채권
 - 2233. 외화수익증권
 - 224. 역외외화본지점
 - 225.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수
 - 226. 역외파생상품자산
 - 227. 역외기타외화자산
- 23. 할인어음(리스)
- 24. 외화특별계정자산(보험)
- 25.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II. 외화부채계정

- 1. 외화예수금
 - 11. 외화당좌예금
 - 12. 외화보통예금
 - 13. 외화별단예금
 - 14. 외화통지예금
 - 15. 외화정기예금
 - 16. 외화정기적금
 - 17. 외국환평형기금예수금(BOK)
- 2. 매도외환(매도수익증권)
- 3. 미지급외환
- 4. 외화콜머니
 - 41. 한국은행(외평기금 포함)
 - 42. 금융기관
- 5. 외화차입금

- 51. 외화타점차
 - 511. 차월
 - 512. 메일크레딧
 - 513. 리파이낸스
- 52. 은행차입금
 - 521. 한국은행차입금
 - 522. 은행차입금
- 53. 외화표시원화차입금
- 54. 전대차입금
 - 541. 정부차입금
 - 542. 국내금융기관차입금
 - 543. 국외차입금
- 55. 외화수탁금
- 56. 기타
- 6. 외화발행금융채권:액면금액
 - (6-1. 외화채권할인발행차금)(-)
 - (6-2. 외화채권할증발행차금)(+)
- 7. 외화리스부채
 - 71. 외화전대리스채무(금융)
 - 72. 외화전대리스채무(선수금)
 - 73. 외화전대운용리스채무
 - 74. 기타
- 8. 외화수입보증금
 - 81. 수입화물선취보증금
 - 82. 파생금융상품계약이행보증금
 - 83. 외화리스보증금
 - 84. 기타
- 9. 외화직불카드채무
- 10. 외화수출팩토링미지급금
- 11.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 12. 외화본지점
 - 121. 국내본지점
 - 122. 국외본지점
 - 1221. 집계정
 - 12211. 갑갑계정
 - 12212. 갑을계정
 - 1222. 을계정
- 13. 기타외화부채

- 131. 외화미지급금
- 132. 외화가수금
- 133. 외화선수수익
- 134. 외화미지급비용
- 135.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 136. 외화지급보증충당금
- 137. 기타

1371. 자본조정[참조항목]

1372. 기타

14. 외화파생상품부채

- 141. 이자율관련
- 142. 통화관련
- 143. 주식관련
- 144. 신용관련
- 145. 기타파생상품부채

15. 역외외화부채

- 151. 역외외화예수금

1511. 비거주자

1512. 타역외계정

- 152. 역외외화차입금

1521. 비거주자

1522. 타역외계정

- 153. 역외외화발행금융채권

- 154. 역외외화본지점

- 155.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도

- 156. 역외파생상품부채

- 157. 역외기타외화부채

III. 기타부외항목

1. 확정외화지급보증

- 11. 수입신용장관련외화지급보증

111. 인수

112. 수입화물선취보증

- 12. 기타외화보증

121. 수입(외화)팩토링인수

122.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도

123. 차관인수

124. 기타외화지급보증

2. 미확정의화지급보증
 21. 수입신용장발행
 22. 차관인수보증
 23. 기타외화보증
3. 배서어음
 31. 담보배서어음
 32. 무담보배서어음
4. 외화약정
 41. 외화대출약정
 42. 역외외화대출약정
 43. 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44. 역외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45. 외화유가증권매입계약
 46. 기타외화약정
5. 외화대손상각채권
6.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
7. 외화환매조건부대출채권매각
8. 외대어음해외매각

IV. 파생상품거래

1. 통화관련

11. 통화선도
 111. 통화선도(차액결제제외)
 112. 통화선도(차액결제)
12. 외환스왑
 121. 외환스왑(차액결제제외)
 122. 외환스왑(차액결제)
13. 통화스왑
 131. 통화스왑(차액결제제외)
 132. 통화스왑(차액결제)
14. 통화선물
15. 통화옵션
 151. 콜옵션
 152. 풋옵션

2. 이자율관련

21. 이자율선도
22. 이자율선물
23. 이자율스왑

24. 이자율옵션

241. 콜옵션

242. 풋옵션

3. 주식관련

31. 주식선도

32. 주가지수선물

33. 주식관련스왑

34. 주식관련옵션

341. 콜옵션

342. 풋옵션

4. 신용관련

41.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42.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43. 토탈리턴스왑(Total Return Swap)

44. 신용부도옵션(Credit Default Option)

441. 콜옵션

442. 풋옵션

45.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DO)

46. 기타신용파생상품

5. 기타파생상품관련

51. 기타파생상품관련 선도

52. 기타파생상품관련 선물

53. 기타파생상품관련 스왑

54. 기타파생상품관련 옵션

541. 콜옵션

542. 풋옵션

나. 외화표시자산항목중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계정과목의 경우에는 각 계정과목별로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과 대손충당금 금액을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외국환은행은 “가.” 에서 정한 계정과목중 대외(국외) 및 대내(국내), 장기 및 단기 구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보고서의 각 계정과목에 대한 기타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종합금융업 회계처리준칙」을 준용한다.

<별표 2>

신고등 업무 처리기준

I. 허가·신고수리

항 목	세 부 심 사 기 준	전결구분	처리기간 ^{주)}	위임 지역본부
1. 금융제재대상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허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3조)	‘금융제재대상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 <별표 2-1> 참조	부 장	20일 이내	—
2.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등에 따른 신고수리 (규정 제9-39조제4항)	1. 투자금액 및 계획의 적정성 여부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여부 3.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 또는 국제평화 및 공공질서의 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4. 기타 「규정」 제9-38조에 의한 신고수리요건 구비 여부	팀 장	5일 이내	전지역 본부
3. 해외지점에 대한 예외적 영업기금지급 신고수리 (규정 제9-19조제3항 단서)	1. 국내 본사의 재무상태 및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필요성 2. 당해 해외지점에 대한 영업기금지급의 불가피성 여부 3. 영업계획과 영업기금 송금액의 부합여부 4. 영업기금 송금액 채원의 적정성	"	"	—
4. 해외지점의 제한된 영업활동 신고수리 (규정 제9-22조제1항)	1. 당해 행위나 거래가 외화획득, 국제수지 개선 등을 위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그 행위나 거래가 당해 해외지점의 활동상 필요한지의 여부	"	"	—

주) 처리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서류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및 공휴일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II. 신고

항 목	확 인 사 항	전 결 구 분	처리기간 ^{주)}	위임 지역본부
1. 회수대상채권 제외 신고, 채권회수기간 연장 신고 (규정 제1-3조제2항, 제3항)	1. 회수대상채권 제외 신고 가. 채권발생 원인행위 확인 나. 회수대상채권 제외사유가 관계증빙서류에 의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다.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의 의견 확인 2. 채권회수기간 연장 신고 가. 채권발생 원인행위 확인 나. 일정기간 연장 이후에는 회수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연장사유가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팀 장	5일 이내	전지역본부
2. 상계에 의한 지급 등 방법 신고 (규정 제5-4조제3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상계대상 채권·채무 성립 여부 3. 거래당사자간 합의서 4. 기타 필요한 사항	팀장보	2일 이내	—
3.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방법 신고 (규정 제5-8조제1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수출입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	—	—
4.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 등 방법 신고 (규정 제5-10조제1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거래당사자간 합의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	—	—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 방법 신고 (규정 제5-11조제3항, 제7-3조제2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당해 지급·수령 상대방과 거래 상대방의 일치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	—	—
6. 자금통합관리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46조제2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자금통합관리의 필요성 여부 3. 관련 계약서 4. 기타 필요한 사항	팀 장	5일 이내	—

주) 처리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서류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및 공휴일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항 목	확 인 사 항	전 결 구 분	처리 기간	위임 지역본부
7. 국내 및 해외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6조제2항, 제7-11조제3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예금·신탁 등 거래행위의 타당성 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	3일 이내	전지역본부
8.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외화증권 발행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14조제4항, 제7-22조제2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	5일 이내	"
9.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 및 원화 대출거래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2-6조제1항, 4항, 5항, 제7-16조제1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여부 4. 원화대출시 300억원 초과 여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	"	"
10.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 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2-8조제2항, 제7-19조, 제7-46조제2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주채무계열소속 30대계열기업체의 단기외화차입에 대한 보증 및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보증, 역외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한 직·간접보증에 해당되는지 여부 4.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확보여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	3일 이내	"
11. 거주자간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 (규정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7-20조제2항, 제7-21조제3항, 제9-43조제2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팀장보	"	"
1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21조제3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팀 장	"	"
13.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31조제2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교환방식 증권취득의 경우 교환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팀 장	5일 이내	전지역본부

항 목	확 인 사 항	전 결 구 분	처 리 기 간	위 임 지 역 분 부
14.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 증권에 취득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32조제3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	3일 이내	"
15.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40조제2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과도한 옵션프리미엄 등 선금수수료의 지급·기존거래의 가격 이전거래·타조항 신고회피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	5일 이내	부산본부, 강남본부
16.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등에 대한 신고 (규정 제9-42조제3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	3일 이내	전지역 본부
17.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46조제2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	"	"
18. 거주자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규정 제9-15조의2)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	"	—

<별표 2-1>

「금융제재대상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3조에 따른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심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침”이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기획재정부장관 고시)을 말한다.
2. “금융제재대상자”란 지침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지급등”이란 지급 및 영수를 말한다.
4. “허가”란 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허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거주자(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금융제재대상자와 지급등을 할 수 없다.

② 한국은행은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의 품목 또는 행위가 지침이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허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주무부장관의 허가 추천) 한국은행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이 지급등의 불가피성 등을 소명하는 공문으로 허가추천을 하는 거래의 지급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별지 1>

신고등의 신청시 제출서류

항 목	항 목 별 제 출 서 류
1. 허가·신고수리	
	<p><공동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사유서 2. 당해 거래 입증서류 3. 거래당사자의 실체 확인서류 4. 서약서 5.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가. 금융제대대상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허가(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별지 3의 공동서식 I 또는 별도 지정서식) 2. 당해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3. 당해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입증하는 서류 4. 기타 신청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등에 따른 신고수리 (규정 제9-39조제4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규정 별지 제9-12호 서식) 2. 부동산 감정서 및 등기부등본 3. 신청인의 신용조회서, 납세증명서 4. 취득자금 재원 확인서류 5. 「규정」 제9-38조의 신고수리요건 부합 입증서류
다. 해외지점에 대한 예외적 영업기금 지급 신고수리 (규정 9-19조제3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공동서식 I) 2. 국내본사의 재무상태 관련서류 3. 영업기금 지급이 부득이 함을 입증하는 서류 4. 영업 계획서 5. 영업계획에 따른 송금액 적정성 입증서류 6. 영업기금 조달 재원 입증서류
라. 해외지점의 제한된 영업활동 신고수리 (규정 제9-22조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별지 3의 공동서식 II) 2. 해외지점의 재무상태 관련 서류

항 목	항 목 별 제 출 서 류
<p>2. 신고</p> <p>가. 회수대상채권 제외 및 채권회수기간 연장 신고 (규정 제1-3조제2항, 제3항)</p> <p>나. 상계에 의한 지급등 방법 신고 (규정 제5-4조제3항)</p> <p>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 방법 신고 (규정 제5-8조제1항)</p> <p>라.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등 방법 신고 (규정 제5-10조제1항)</p> <p>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 방법 신고 (규정 제5-11조제3항, 제7-3조제2항)</p> <p>바. 자금통합관리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46조제2항)</p> <p>사. 국내 및 해외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6조제2항, 제7-11조제3항)</p> <p>아.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외화증권 발행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14조제4항, 제7-22조제2항)</p> <p>자.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 및 원화 대출거래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2-6조제1항, 4항, 5항, 제7-16조제1항)</p>	<p><공통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신고 사유서 2. 당해 거래 입증서류 3. 거래당사자의 실체 확인서류 4. 서약서 5.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p>가. 회수대상채권 제외 및 채권회수기간 연장 신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2. 채권발생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회수대상채권 제외 및 회수기간 연장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p>나. 상계에 의한 지급등 방법 신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2. 상계대상 채권·채무 입증서류 3. 당해 지급등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등 <p>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 방법 신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2. 당해 지급등 입증서류 <p>라.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등 방법 신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2. 당해 지급등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3. 당해 지급등 관련 입증서류 <p>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 방법 신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2. 당해 지급등 관련 입증서류 <p>바. 자금통합관리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별지 3의 공통서식Ⅱ) 2. 관련계약서 3. 자금통합관리계획서 등 신고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p>사. 국내 및 해외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1호 서식) 2. 예금(신탁)거래 계약서 3. 신고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p>아.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외화증권 발행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2호 또는 제7-5호 서식) 2. 차입계약서(증권발행계획서) 3. 신고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시 해당 신고서 <p>자.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 및 원화 대출거래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2호 서식) 2. 대출계약서 3.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시 해당 신고서

항 목	항 목 별 제 출 서 류
차.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2-8조, 제7-19조, 제7-46조제2항)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3호 서식) 2. 보증(계약)서 3.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방안 입증서류
카. 거주자간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7-20조제2항, 제7-21조제3항, 제9-43조제2항)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4호 서식) 2. 관련계약서 3. 매매대상물 실체 및 취득경위 입증서류 4. 관할 세무서 발행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국내부동산 매각자금 해외반출을 위한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시)
타.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규정 제7-31조제2항)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6호 서식) 2. 투자개요서 3. 증권취득 계약서 4. 보유증권 교환방식에 의한 경우 교환가격의 적정성 입증서류
파.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규정 제7-32조제3항)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6호 서식) 2. 증권취득 계약서
하.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규정 제7-40조제2항)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7호 서식) 2. 파생상품거래 관련 계약서 3. 당해 거래의 타당성 입증서류(규정 제7-40조제2항 각 호의 경우)
거.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등에 대한 신고(규정 제9-42조제3항)	1. 신고서(규정 별지 제9-12호 서식) 2. 부동산 취득 관련 계약서 3. 취득재원 확인서류
너.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신고(규정 제7-46조제2항)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8호, 제7-9호, 제7-11호 서식외) 2. 관련계약서
더. 거주자의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규정 제9-15조의2)	1. 신고서(규정 별지 제9-2호 서식) 2. 투자목적 및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현지 설립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의 입증 서류 4. 역외금융회사의 최근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존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의 경우)

<별지 2>

보 고 서

가.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보고서

보고서 번호	구분	보 고 서 명	보고자	비고 ¹⁾
1-4-1	일보	종합포지션 상황 보고서	외국환은행	FX4441, FX4442, FX4444
1-4-2	일보	차액결제선물환(NDF) 포지션 보고서	외국환은행	FX4430
1-4-3	일보	외화대출상황보고서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사, 신기술금융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FX5220
1-4-4	일보	일중포지션 현황	외국환은행	FX4410, FX4420
1-4-5	일보	선물환포지션 상황 보고서	외국환은행	FX4450
1-4-6	월보	중소제조업체 국내시설자금 대출한도액 운용 보고서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사, 신기술금융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FX5221
1-4-7	월보	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 투자 현황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자	

주 : 1) 외환전산망 보고서 번호

나. 외환통계 보고서

보고서 번호	구분	보 고 서 명	보고자 ¹⁾	비고 ²⁾
2-1-1	일보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0001
2-1-2	일보	L/C통지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0002
2-1-3	일보	수출환어음 C/A(입금처리)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0003
2-1-4	일보	수출환어음 부도 및 상환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0004
2-1-5	일보	수입 개설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0005
2-1-6	일보	수입 조건변경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0006
2-1-7	일보	수입결제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0007
2-1-8	일보	Usance 인수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0010
2-1-9	일보	당발송금(1,000달러초과분)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우정사업본부	FX0012

보고서 번호	구분	보고서명	보고자 ¹⁾	비고 ²⁾
2-1-10	일보	타발송금(1,000달러초과분)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우정사업본부	FX0013
2-1-11	일보	외국통화매매(1,000달러초과분)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FX0015
2-1-12	일보	외화수표(여행자수표) 매매(1,000달러 초과분)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FX0017
2-1-13	일보	외화예금/외화신탁 거래(1,000달러초과분)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0018
2-1-14	일보	비거주자 원화계정/자유원계정/원화 신탁계정 거래	외국환은행	FX0019
2-1-15	일보	외국환은행의 외화증권 발행 및 상황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0021
2-1-16	일보	외국환은행의 외화 차입 및 상황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0022
2-1-17	일보	국내 외화대출채권 해외매각 현황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사, 신기술금융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FX0024
2-1-18	일보	외화대출 발생 및 회수(상황)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사, 신기술금융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FX0025
2-1-19	일보	외화예금/외화신탁 잔액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0039
2-1-20	일보	비거주자 증권예탁금 등(수익증권포함) 예치 및 회수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증권금융	FX0041
2-1-21	일보	비거주자 국내증권거래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코스콤	FX0042
2-1-22	일보	비거주자 증권예탁금 등(수익증권포함) 예치금 잔액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증권금융, 코스콤	FX0052
2-1-23	일보	비거주자 국내증권투자 잔액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코스콤	FX0059

보고서 번호	구분	보고서명	보고자 ¹⁾	비고 ²⁾
2-1-24	일보	외화예금/외화신탁 잔액(1,000달러초과분)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0118
2-1-25	일보	비거주자 원화계정/자유원계정/원화신탁계정 잔액	외국환은행	FX0119
2-1-26	일보	국내증권/선물 거래규모 및 시가 총액	코스콤, 한국거래소	FX7570
2-1-33	일보	외화정기예금 금리동향	외환은행	FX5750
2-1-35	일보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발생 및 회수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FX8081
2-1-36	일보	비거주자의 원화증권(원화연계외화증권포함) 차입 및 상환 현황	한국예탁결제원, 투자매매·중개업자, 증권금융	FX8083
2-1-37	일보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원화증권(원화연계외화증권포함) 발행 및 상환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8084
2-1-38	일보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금 잔액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FX8181
2-1-39	일보	비거주자의 원화증권(원화연계외화증권포함) 차입 및 상환잔액 현황	한국예탁결제원, 투자매매·중개업자, 증권금융	FX8183
2-1-40	일보	FX거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FX2001
2-1-41	일보	금리 및 통화스왑거래 신규 및 청산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	FX2002
2-1-42	일보	옵션거래 신규 및 청산보고서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 한국거래소	FX2003
2-1-43	일보	선물(Futures)거래 신규 및 청산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 한국거래소	FX2004
2-1-44	일보	금리, 주식 및 상품선도거래 신규 및 청산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	FX2005
2-1-45	일보	비거주자 장내파생금융거래 잔액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 한국거래소	FX2009

보고서 번호	구분	보 고 서 명	보고자 ¹⁾	비고 ²⁾
2-1-46	일보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이용권 취득 신고 및 송금(입금) 현황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8200
2-2-1	주보	금융기관 단기외화부채 Roll-over 현황	외국환은행	FX6090
2-3-1	10일보	금융기관 외화 B/S(난내 총괄)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6610
2-3-2	10일보	금융기관 외화B/S(과생상품거래 총괄)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6541
2-4-1	월보	통관수출	관세청	FX0060
2-4-2	월보	통관수입	관세청	FX0061
2-4-3	월보	기술도입대가지급 상황월보	외국환은행	FX4060
2-4-4	월보	리스사 및 증권회사의 외화차입 상황 보고	투자매매·중개업자, 리스사, 할부금융사	FX4090
2-4-5	월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및 회수실적	예금은행(판매대행회사 허가를 득한 은행에 한함),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FX4130
2-4-7	월보	금융기관 외화B/S(기타 부외항목 총괄)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6380
2-4-8	월보	금융기관 외화B/S(과생상품거래 총괄)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과생), 여신전문회사	FX6541
2-4-9	월보	금융기관 외화B/S(난내총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FX6610
2-4-10	월보	외국직접투자가 배당금 및 출자금회수 송금실적	외국환은행	FX6760
2-4-11	월보	거주자발행 외화증권 등 보유현황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6810
2-4-12	월보	대손충당금 등 내역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6890
2-4-13	월보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상환 현황	외국환은행	FX7071
2-4-14	월보	거주자의 해외증권 발행 및 상환 현황	외국환은행	FX7072
2-4-15	월보	역외금융이체 및 직접투자 현황보고서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7680
2-4-16	월보	건당 1,000달러 이하 집계 보고서	외국환은행, 상호금융	FX7700

보고서 번호	구분	보고서명	보고자 ¹⁾	비고 ²⁾
2-4-17	월보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현황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등	FX5460
2-4-18	월보	비은행금융기관 해외예치금 잔액 증감 내역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투자일임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등 해외예치금계좌를 보유한 비은행금융기관(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제외)	FX5480
2-4-19	월보	금융기관 외화자산 건별 잔액 보고서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7710
2-4-20	월보	금융기관 외화부채 건별 잔액 보고서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7720
2-4-21	월보	월중 현물환거래 현황	외국환업무취급기관	FX7600
2-4-22	월보	금융기관 KOREAN PAPER 투자(보유) 현황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FX4150
2-4-23	월보	금융기관 외화자산 및 부채 건별보고서 (기타)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7721
2-4-24	월보	파생금융거래 잔액보고서(시가기준)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여신전문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FX5490
2-4-25	월보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 건별 잔액보고서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FX2011
2-4-26	월보	파생결합상품거래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	FX2006
2-4-27	월보	비정형파생상품거래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	FX2007

보고서 번호	구분	보고서명	보고자 ¹⁾	비고 ²⁾
2-4-28	월보	신용과생상품거래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	FX2008
2-4-29	월보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및 처분 현황	외국환은행	FX8210
2-5-1	분기보	기관투자가 외화증권 투자보고서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FX4812
2-5-2	분기보	기관투자가 보유외화증권현황(지역별/ 통화별)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FX4814
2-5-3	분기보	기관투자가 외화증권 기타보고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FX4816
2-5-4	분기보	외국환은행의 국가별 부외항목 익스포저 현황	외국환은행 (외은지점 제외)	
2-5-5	분기보	외국환은행의 국가별 파생상품 익스포저 현황	외국환은행 (외은지점 제외)	
2-7-1	연보	해외신용카드 등 사용실적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FX7930

주 : 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한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우정사업본부 및 그 밖의 금융기관(「외국환거래규정」 제2절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외국환중개회사를 제외)을 포함
2) 외환전산망 보고서 번호

다. 외국환거래 현황 관련 보고서

보고서 번호	구분	보고서명	보고자
3-4-1	월보	분할영수 수출기업 보고서	해당거래업체
3-4-2	월보	증권대차현황	해당거래당사자
3-4-3	월보	외환증거금거래실적	외국환은행
3-4-4	월보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채권 거래현황	국제예탁결제기구
3-4-5	월보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현황	국제예탁결제기구
3-4-6	월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증권 차입·대여 내역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5-1	삭제	삭제	삭제
3-5-2	분기보	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 현황	역외금융회사 투자자
3-5-3	분기보	신용카드 등의 사용실적 보고서	한국여신금융협회
3-5-4	분기보	여행자카드(VTM) 사용 실적 보고서	여행자카드 발행인, 판매인
3-5-5	분기보	내국통화 수출입 실적보고서	외국환은행
3-5-6	분기보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운영현황	자금통합관리 신고인
3-6-1	반기보	현지금융 차입·상환·보증등 한도 운영현황 보고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3-7-2	연보	해외예금 입금보고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3-7-3	연보	해외예금 및 신탁 잔액현황	지정거래외국환은행
3-8-1	수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보고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3-8-2	수시	증권대차내역	해당거래당사자
3-8-3	수시	신용과생금융거래 내역 보고서	외국환은행
3-8-4	수시	역외금융회사 투자금 회수 내역 보고서	역외금융회사 투자자

라. 부동산 취득 등 관련 보고서

보고서 번호	구분	보고서명	보고자
4-8-1	수시(취득시)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부동산 취득자
4-8-2	수시(처분시)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	부동산 취득자

마. 해외지사 등 기타 보고서

보고서 번호	구분	보고서명	보고자
5-5-1	분기보	해외지점 영업기금 지급 및 사용내역 보고서	해외지점 설치자
5-7-1	연보	외국기업 국내지사 영업자금 도입보고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5-7-2	연보	해외 학교·병원 자금운영 현황	설립·운영자

바. 외국환중개회사 보고서

보고서 번호	구분	보고서명	보고자 ¹⁾	비고 ²⁾
6-1-1	일보	외환매매 및 외화자금 거래중개 일보	외국환중개회사	FX0055, FX0067, FX0068, FX0069, FX0070, FX0071, FX0072, FX0073
6-8-1	수시	외국환중개거래 수수료 결정내용 보고	외국환중개회사	

주: 1) 외국환은행 등에는 외국환은행 및 종급사 포함

2) 외환전산망 보고서 번호

전월말 현재 환리스크헤지대상 자기자본		
외은 지점	· 갑기금	백만원
	· 자본잉여금	백만원
	· 제준비금	백만원
	계 (c)	백만원
	* 적용환율 (R) (C)=(c)÷(R)×1,000	₩ / USD = 천미달러
국내은행납입자본금중 외국금융기관투자본(C)		백만원 천미달러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헤지분 등에 대해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외국환은행	
— 이월이익잉여금	
o 전월말현재 이월이익잉여금(d)	백만원
* 적용환율 (R)	₩/USD =
(D) = (d)÷(R)×1,000	천미달러

(단위 : 천미달러)

일자	매입 초과 포지션						매각 초과 포지션					
	미국 달러 ①	일본 엔 ②	유로 ③	영국 파운드 ④	기타 ⁶⁾ ⑤	계 ⑥=①~⑤	미국 달러 ⑦	일본 엔 ⑧	유로 ⑨	영국 파운드 ⑩	기타 ⁶⁾ ⑪	계 ⑫=⑦~⑪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합계												
평잔												

기타통화별 포지션상황

(단위 : 천미달러)

일자	매입 초과 포지션 ^㉞						매각 초과 포지션 ^㉞					
						소계 ⑬=⑤						소계 ⑭=⑪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합 계												
평 잔												

외화자산·부채 현황⁸⁾

(. . . 현재)

(단위 : 천미달러)

국가명	통화명	통화 표시	종합 포지션	현물 포지션		선물 포지션	선물 포지션	
				현물 외화자산	현물 외화부채		선물 외화자산	선물 외화부채
미국	달러	USD						
일본	엔	JPY						
	유로	Euro						
영국	파운드	GBP						
캐나다	달러	CAD						
⋮								
계								

- 주 : 1) 자기자본 헤지분, 이월이익잉여금 헤지분 등 「세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 관리대상 제외분을 차감한 후 산출된 각 통화별 매입포지션 합계와 매각포지션 합계 중 절대값이 큰 것을 관리대상포지션으로 기재
매각포지션 합계가 관리대상 포지션으로 산정될 경우에는 금액앞에 (-) 부호를 표시하되 관리대상포지션의 합계 및 평잔은 매입 및 매각초과포지션 모두 절대값을 기준으로 작성
- 2) 「규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별도한도로 인정한 금액(외은지점의 이월이익 잉여금 헤지분 제외) 기재
- 3) 「세칙」 제2-5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한도관리에서 제외되는 실제 헤지금액 기재
- 4) 「세칙」 제2-5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왑거래 잔액 기재
- 5) 「세칙」 제2-5조 제1항제4호에 따라 한도관리에서 제외되는 통화옵션거래 및 델타헤징 방식에 의한 커버거래에서 발생하는 외국환매입분 또는 외국환매각분
- 6) “기타통화별 포지션상황”의 “소계”와 동일한 금액을 기재
- 7) 모든 기타통화는 규모순으로 기재
- 8) 외화자산·부채현황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

(작성요령)

1. 미달러화이외의 통화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제33조에서 정한 대미달러환산율을 적용하여 미달러화로 환산
2. 각 통화별 매입 및 매각포지션 모두 절대치로 기재
3. 각종 포지션의 월 합계 및 평잔은 영업일 및 외국환거래가 발생한 날만을 기준으로 산출
4.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직인, 담당책임자 및 담당자의 인장(또는 서명)을 날인
5. 제출기한(해당월 익월 15일) 준수요망

기타통화별 포지션상황

(단위 : 천미달러)

일 자	매입 초과 포지션 ⁹⁾						매각 초과 포지션 ⁹⁾							
							소계 ⑬=⑤							소계 ⑭=⑪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합 계														
평 잔														

외화자산·부채 현황⁶⁾

(. . . 현재)

(단위 : 천미달러)

국가명	통화명	통화 표시	종합 포지션	현물	현물		선물	선물	
				포지션	외화자산	외화부채	포지션	외화자산	외화부채
미국	달러	USD							
일본	엔	JPY							
	유로	Euro							
영국	파운드	GBP							
캐나다	달러	CAD							
⋮									
계									

- 주 : 1) 「세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 관리대상 제외분을 차감한 후 각 통화별 매입포지션 합계와 매각포지션 합계중 절대값이 큰 것을 관리대상포지션으로 기재
매각포지션 합계가 관리대상 포지션으로 산정될 경우에는 금액앞에 (-) 부호를 표시하되 관리대상포지션의 합계 및 평잔은 매입 및 매각초과포지션 모두 절대값을 기준으로 작성
- 2) 「규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별도한도로 인정한 금액 기재
- 3) 「세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도관리에서 제외되는 통화옵션거래 및 델타헤징 방식에 의한 커버거래에서 발생하는 외국환매입분 또는 외국환매각분
- 4) “기타통화별 포지션상황”의 “소계”와 동일한 금액을 기재
- 5) 모든 기타통화는 규모순으로 기재
- 6) 외화자산·부채현황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

(작성요령)

1. 미달러화이외의 통화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제33조에서 정한 대미달러 환산률을 적용하여 미달러화로 환산
2. 각 통화별 매입 및 매각포지션 모두 절대치로 기재
3. 각종 포지션의 월 합계 및 평잔은 영업일 및 외국환거래가 발생한 날만을 기준으로 산출
4.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직인, 담당책임자 및 담당자의 인장(또는 서명)을 날인
5. 제출기한(해당월 익월 15일) 준수요망

<1-4-2>

차액결제선물환(NDF) 포지션 보고서

(거래통화 :)

수신 : 한국은행 국제국장
참조 : 외환시장팀

보고기관 :
담당 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날짜	구분	전일잔액(t-1)			금일중 변동 내역						금일잔액(t)			향후 Fixing분			
					신규거래			금일 Fixing분									
		매입 포지션 (A)	매도 포지션 (B)	순매입 포지션 (C=A-B)	매입 (D)	매도 (E)	순매입 (F=D-E)	기존 매입 (G)	기존 매도 (H)	I=H-G	매입 포지션 (J=A+D-G)	매도 포지션 (K=B+E-H)	순매입 포지션 (L=C+F+I)	t+1	t+2	t+3	t+4
	비거주자																
	외국환은행																
	-																
	계																

<작성시 주의사항>

- 1> 단위는 천달러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 2> 음영된 부분에만 입력하시고, 화일이름, 셀 주소 및 시트이름 등은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 3> 전산에 정확히 반영되기 위하여 날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공휴일 등 거래가 없는 날은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 5> 매입, 매도 및 매입포지션, 매도포지션 모두 양수로 입력해 주십시오.
- 6> 포지션은 Fixing date(만기전 2영업일 이내)를 기준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 7> ND방식의 외환스왑 및 통화스왑이 포함되나, 옵션거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8> 금일 Fixing분 기존매도(입)는 기존에 매도(입)한 부분입니다.(금일 B/S 만기소멸)
- 9> '향후 Fixing분' 에는 해당일에 fixing으로 발생하는 순포지션(net position)을 기입해 주십시오.(양수(+), 음수(-)로 구분하여 표시)
예) 해당일에 소멸되는 기존거래가 buy 10, sell 5인 경우 발생하는 순포지션은 -10+5=-5가 됨
- 10> 과거 자료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해 주십시오.
- 11> USD, JPY, EUR 이외 기타통화에 대한 포지션을 보유하신 기관에서는 유선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 12> 매일 17:30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13> 문의안내 : 759-5873, 5740, 5763

<1-4-3>

외화대출상황보고서 (월보)

수 신 : 한국은행총재

참 조 : 국제국장

_____ 년 월

외국환은행	대 표 자	(인)
담당책임자	직 성 명 전 화	(인)
담 당 자	직 성 명 전 화	(인)

(단위 : 천미달러)

	대 기 업			중 소 기 업 ²⁾			개 인 사 업 자 ³⁾			합 계		
	신규대출액	상환액	대출잔액	신규대출액	상환액	대출잔액	신규대출액	상환액	대출잔액	신규대출액	상환액	대출잔액
I. 해외사용자금												
1. 물품수입자금 및 용역대가지급 (시설재수입자금)												
2. 해외직접투자자금												
3. 대외외화차입금 상환자금												
4. 기타 해외사용 실수요자금												
II. 국내사용자금												
1. 시 설 자 금 (제조업체 시설자금)												
2. 대내외화차입금 상환자금												
3. 기 타 ⁴⁾												
합 계 (I+II)												

주 :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4-1>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의 외화대출금중 외화대출, 외화표시원화대출, 기타(거주자에 대한 대출분)와 대내외화사모사채를 대상으로 작성

2)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 3) 가계 포함 4) 운전자금 등 기타 국내사용자금

* 이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익월 7영업일까지입니다.

전월말 현재 환리스크헤지대상 자기자본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헤지분 등에 대해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외국환은행		제도 도입전 선물환거래에 대하여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외국환은행	
외 은 지 점	· 갑기금 · 자본잉여금 · 제준비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이월이익잉여금		- 제도 도입전 거래에 의한 한도 초과분 천미 달러
	계 (c)	백만원	○ 전월말현재 이월이익잉여금(d)		
* 적용환율 (R)	₩ / USD =		* 적용환율 (R)		- 만기도래로 인한 한도 축소분 천미 달러
	(C)=(c)÷(R)×1,000 0	천미달러	(D) = (d)÷(R)×1,000		
국내은행납입자본 금중 외국금융기관투자 분(C)		백만원 천미달러			

- 주 : 1) 자기자본 헤지분, 이월이익잉여금 헤지분, 제도 도입전 선물환거래 별도한도 인정분 등 「세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 관리대상 제외분을 차감한 후 산출된 선물환매입포지션 합계[(+) 부호]와 선물환매각포지션 합계[(-) 부호]의 총합의 1개월 이동평균 잔액을 선물환포지션으로 기재
선물환포지션이 선물환매각포지션으로 산정될 경우에는 금액앞에 (-) 부호를 표시
- 2) 선물환포지션의 1개월 이동평균 잔액을 산출하기 위한 일별 선물환포지션을 기재
 - 3) 「규정」 제2-9조의2제3항에 의거 한국은행총재가 별도한도로 인정한 금액(외은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 헤지분 및 제도 도입전 선물환거래 별도한도 인정분 제외) 기재
 - 4) 「세칙」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한도관리에서 제외되는 실제 헤지금액 기재
 - 5) 「세칙」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왑거래 잔액 기재
 - 6) 「세칙」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도관리에서 제외되는 통화옵션거래

(작성요령)

1. 미달러화이외의 통화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제33조에서 정한 대미달러환산율을 적용하여 미달러화로 환산
2. 각종 포지션의 월 합계 및 평잔은 영업일 및 외국환거래가 발생한 날만을 기준으로 산출
3.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직인, 담당책임자 및 담당자의 인장(또는 서명)을 날인
4. 제출기한(해당월 익월 15일) 준수요망(외환전산망을 통한 보고가 가능할때까지 e-mail로 송부)
5. 통화스왑관련 근일물(만기 2영업일 이내)은 현물환 포지션에 반영하며, 차액결제선물환(NDF), 차액결제외환스왑(ND스왑) 및 차액결제통화스왑(ND CRS)의 경우 Fixing date(만기전 2영업일 이내) 기준으로 선물환포지션에 반영

<1-4-6>

월중 중소기업체 국내 시설자금 대출¹⁾²⁾한도액 운용보고서

수신 : 한국은행 총재

보고기관

참조 : 국제국장

담당책임자	직성명	(인)
	전화번호	
담당자	직성명	(인)
	전화번호	

_____년 _____월

2010.6.30일 대출 잔액(USD)	
-----------------------	--

(단위 : 해당통화, 달러)

보고일자	대출/상환구분 ³⁾	차주명	사업자등록번호	대출통화	대출금액	대출미달러환산금액 ⁴⁾	상환금액	상환미달러환산금액 ⁴⁾	대출잔액 ⁵⁾	한도초과금액 ⁶⁾
계										

주 :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제2-7조의 외화대출을 대상으로 작성
 2) 보고대상 : 월중 대출 실행 또는 상환이 발생한 거래를 대상으로 작성
 3) 대출은 1, 상환은 2
 4) 미달러화이외의 통화에 대해서는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2010.6.30일자 매매기준율을 적용
 5) 대출 또는 상환이 발생한 일자의 보고기관 전체 대출잔액
 6) 한도초과금액은 보고일자별로 보고된 대출잔액이 2010.6.30일 대출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기재,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

<1-4-7>

국내 발행 외화채무증권¹⁾ 투자현황(월보)²⁾

수 신 : 한국은행총재

참 조 : 국제국장

_____년 _____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대 표 자	(인)
담당책임자	직 성 명 전 화	(인)
담 당 자	직 성 명 전 화	(인)

(단위 : 천미달러 및 천해당통화)

매입/ 매각 ³⁾	채권 번호	발행 일자	만기 일자	매입 일자	매각 일자	표시 통화	액면 금액 ⁴⁾	매입 가격 ⁴⁾	매각 가격 ⁴⁾	액면USD 환산금액 ⁵⁾	매입가격 USD 환산금액 ⁵⁾	금리 ⁶⁾				용도 ⁷⁾		발행자 ⁸⁾						
												이자 유형	변 동 금 리 구 분	금 리 수 준	금 리 스 레 드	용 도 구 분	용 도 항 목	기 업 명	성 격 구 분	업 종 구 분				

- 주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에서 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하고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말함
 2) 제출기한은 익월 7영업일까지이며 보고기준일은 매월말일임
 3) 매각에는 만기상환도 포함하며 매각시에는 채권번호, 매각일자, 매각가격만 기입
 4) 액면금액 및 매입가격, 매각가격 단위는 천해당통화임
 5) 액면 USD환산금액 및 매입가격의 USD환산금액은 보고기준일 현재 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단위는 천미달러임
 6) 이자유형구분은 고정/변동이며 변동금리 구분은 이자유형구분이 변동일 경우에만 기입 (Libor/Sibor/Tibor/Hibor/Euriobor/Euro-Libor/기타)로 기입하며 금리수준은 고정금리인 경우에, 금리 spread는 변동금리인 경우에 각각 %와 BP단위로 입력
 7) 용도는 원화사용/외화사용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며 용도항목은 외화사용일 경우에만 기입 (국내사용시설자금/국내사용운전자금/대내외화차입금상환자금/국내사용기타자금 및 해외사용시설자금/해외사용운전자금/대외외화차입금상환자금/해외사용기타자금), 단 2011.6월 이전 발행분에 대해서는 용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입
 8) 발행자성격은 대기업/중소기업/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하며 업종구분은 제조업/비제조업으로 구분

<2-5-4>

외국환은행¹⁾의 국가별 부외항목 익스포저²⁾ 현황(분기보)
(. . . 현재)

작성기관				
	소속부서	직책	성명	전화번호
작성자				
확인자				

(단위: 미달러)

거래상대방 국가 ³⁾		1. 확정지급보증		2 미확정 지급보증	3. 약정						
국가명	ISO code	원화 지급보증	외화 지급보증		원화 대출약정	외화 대출약정	역외외화 대출약정	외화증권 인수약정	역외외화증권 인수약정	유가증권 매입계약	기타 외화약정
합 계											

- 주 : 1) 외은지점 제외
 2)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연결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
 3) 거래상대방이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법인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본점소재국에 따라 작성

(작성요령)

1. 대상금액은 매분기 말일자 잔액임
2.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제33조에서 정한 대미화 환산율을 적용하여 미달러화로 환산
3. 제출기한(익익월 15일 17시 30분) 준수 요망

<2-5-5>

외국환은행¹⁾의 국가별 파생상품 익스포저²⁾ 현황(분기보)
(. . . 현재)

작성기관				
	소속부서	직책	성명	전화번호
작성자				
확인자				

1. 자산 및 부채

(단위: 미달러)

거래상대방 국가 ³⁾		1. 파생상품자산					2. 파생상품부채					
국가명	ISO code	이자율	통화	주식	신용	기타	이자율	통화	주식	신용	기타	
		관련거래	관련거래	관련거래	파생상품	파생상품	관련거래	관련거래	관련거래	파생상품	파생상품	
합 계												

2. 명목잔액

(단위: 미달러)

거래상대방 국가 ³⁾		파생상품 명목잔액				
국가명	ISO code	이자율	통화	주식	신용	기타
		관련거래	관련거래	관련거래	파생상품	파생상품
합 계						

- 주 : 1) 외은지점 제외
 2)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연결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
 3) 거래상대방이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법인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본점소재국에 따라 작성

(작성요령)

1. 대상금액은 매분기 말일자 잔액임
2.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는 원화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제33조에서 정한 대미화 환산율을 적용하여 미달러화로 환산
3. 명목잔액의 경우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제33조에서 정한 대미화 환산율을 적용하여 미달러화로 환산
4. 제출기한(의의월 15일 17시 30분) 준수 요망

<3-4-1>

분할영수수출기업 보고서(FX7910)

(년 월 중)

수신 : 한국은행 국제국장

참조 : 외환분석팀장

(단위 : 천미달러)

업체명	법인 번호	작성 기준일자	전송 구분 ¹⁾	고유번호 ²⁾ (선박번호)	인도 구분 ³⁾	국내 선주명 ⁴⁾	계약 일자 ⁵⁾	계약 통화 ⁶⁾	계약 금액 ⁷⁾	인도 (예정)일자 ⁸⁾	물품 종류 ⁹⁾

H.S CODE ¹⁰⁾	가격 조건 ¹¹⁾	수출 국가 ¹²⁾	거래전 ¹³⁾ 선수금 잔액	거래전 ¹⁴⁾ 미수금 잔액	거래후 ¹⁵⁾ 선수금 잔액	거래후 ¹⁶⁾ 미수금 잔액	거래 구분 ¹⁷⁾	거래자 및 자금구분 ¹⁸⁾	거래 발생 일자 ¹⁹⁾	거래 금액 ²⁰⁾	일람불 ²¹⁾ 인도 금액

연지급 ²²⁾ 인도금액	연지급 ²³⁾ 인도기일	조정거래 사유 ²⁴⁾	기타조정 내용 ²⁵⁾	취급 은행 ²⁶⁾	영수 방법 ²⁷⁾	기타영수 사유 ²⁸⁾	작성자 소속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연지급 인도금액 (체크용) ²⁹⁾

주 : 1) 1 : 정상, 2 : 삭제, 4 : 수정 2) 선박인 경우 선박번호 등 고유관리번호
 3) 1 : 국내인도(BBC-HP 등) 2 : 해외인도
 4) 선박인도구분에서 1:국내인도 를 선택했을때 건조선박을 인도받는 해운사명을 입력
 5) YYYYMMDD 6) 통화코드 입력 7) USD환산금액 (천미달러) 8) YYYYMMDD
 9) **1:선박, 2:해양설비, 3:플랜트, 4:기타** * 1, 2, 3 이 섞인 경우 가장 큰 것으로 선택
 10) 선박 (8901), 해양설비(8905), 플랜트(8401,8501 등), 기타(코드를 알면 입력하고, 모르면 8601 입력), 입력코드는 HS코드 총분류 4자리 코드입
 11) 11:FOB, 12:C&F, 13:CIF, 14:C&I, 15:EXW, 16:FAS, 17:FCA, 18:CPT, 19:CIP, 20:DES, 21:DEQ, 22:DAF, 23:DDP, 24:DDU, 99:기타
 12) 국가코드 입력
 13) USD환산금액 (천미달러), 거래구분이 11(선수금영수), 14(선수금반송), 16(선수금조정), 19(이행)인 경우만 입력(음수 불가)
 14) USD환산금액 (천미달러), 거래구분이 12(미수금영수), 17(미수금조정), 19(이행)인 경우만 입력(음수 불가)
 15) 자동계산 16) 자동계산
 17) 11 : 선수금영수, 12 : 선수금반송, 13 : 선수금조정, 14 : 인도시영수, 19 : 인도(이행), 21 : 미수금영수, 22 : 미수금조정, 99 : 거래없음
 18) 1 : 비거주자와의 외화거래, 2 : 비거주자와의 원화거래, 3 : 거주자와의 외화거래, 4 : 거주자와의 원화거래, 9 : 구분안함(19:인도의 경우) * 거래구분이 '99:거래없음'인 경우 입력안함
 19) YYYYMMDD, 선수영수, 미수영수, 인도영수, 선수조정, 미수조정, 인도(수출이행) 일자
 * 거래구분이 '99:거래없음'인 경우 입력안함
 20) USD환산금액(천미달러), 선수영수, 미수영수, 인도영수, 선수조정, 미수조정, 인도(수출이행) 금액 * 거래구분이 '99:거래없음'인 경우 입력안함
 21) 자동계산 22) 자동계산
 23) 거래구분이 인도로서 미수금(연지급인도)이 있는 경우, 동 미수금의 완납일까지의 일수를 입력
 24) **선수금조정** 11 : 계약해지, 12 : 계약위약금조로 상계, 19 : 기타조정(미수금조정) 21 : 국내보통업자등 거주자로부터 회수, 22 : 대손상각처리, 29 : 기타조정
 * 거래구분이 조정인 경우 필수 입력,
 25) 조정거래 사유가 19:기타조정, 29:기타조정인 경우 그 내용 기재
 26) 영수 및 반송은 입금 및 반송은행을, 조정 및 인도의 경우는 영수대금 입금은행을 입력
 27) 1 : 직접송금, 2 : 네고, 3 : 추심, 4 : 기타 * 인도의 경우 '4'를 선택
 28) 영수방법이 4:기타인 경우 사유기재
 29) 자동으로 계산된 연지급인도금액과 일치하는지 자료의 정확성 체크를 위해 입력(거래구분이 '19:인도'인 경우에만 입력)

* 이 보고의 제출시한은 해당월 익월 15일까지입니다.

<3-4-2>

업무종류구분코드		작성기준일	
보고서종류		보고주기	월보
작성기관	증권대차자		
	소 속	직책	성 명
작성자	은행 부(점)		
확인자	은행 부(점)		

증권대차현황
(년 월)

1. 증권대차현황

(억원)

증권 대차자	증권 대여일	대 차 대 상 증 권					증권대여자	대차기간 ²⁾
		증권종류 ¹⁾	증권명	수량(A)	대차단가 (B)	대차가액 (C=A*B)		

- 주 : 1) 1. 주식(출자지분 포함) 2. 국채, 지방채, 사채
 3. 수익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유동화증권 5. 기타
 2) 1. 대차기간 만료전의 경우 증권대차계약상의 대차기간
 2. 대차기간 만료 후 실제 대차기간

2. 증권대차 잔액

(억원)

증권 대차자	증권 대여자	증권대차현황		전월말 잔액	금월말 잔액
		대차금액	상환금액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제2항에 의한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익월 10일까지입니다.

<3-4-3>

업무종류구분코드		작성기준일	
보고서종류		보고주기	월보
작성기관	외국환은행		
	소 속	직책	성명
작성자	은행 부(점)		
확인자	은행 부(점)		

외환증거금거래 실적

1. 외환증거금거래 내역

(천미달러)

거래대상 ¹⁾	거래금액							
	매입 ²⁾				매도 ²⁾			
	신규매입		일일 미결제약정 누계		신규매도		일일 미결제약정 누계	
	수량 ³⁾	금액 ⁴⁾	수량 ³⁾	금액 ⁴⁾	수량 ³⁾	금액 ⁴⁾	수량 ³⁾	금액 ⁴⁾

2. 월말 미결제약정 현황

(천미달러)

거래대상 ¹⁾	전월말 미결제약정				당월말 미결제약정			
	매입 ²⁾		매도 ²⁾		매입 ²⁾		매도 ²⁾	
	수량 ³⁾	금액 ⁴⁾	수량 ³⁾	금액 ⁴⁾	수량 ³⁾	금액 ⁴⁾	수량 ³⁾	금액 ⁴⁾

3. 증거금 잔액

(백만원)

거래대상 ¹⁾	전월말 증거금 잔액		월중 증거금 변동		당월말 증거금 잔액	
	계좌수	금액	입금	출금	계좌수	금액

<작성요령>

- 1) 거래통화별로 구분하여 기재(예: 원/달러거래는 “원/달러”, 달러/엔거래는 “달러/엔” 등으로 기재)
- 2) 매입/매도는 원화/외국통화매매시는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외국통화간매매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통화(base currency)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외국통화(기준통화) 편도거래를 기재(예: 유로매입/달러매도의 경우 매입으로 기재)
- 3) 수량은 최소계약단위기준 수량을 기재
- 4) 금액은 최소계약단위 기준수량 x 최소계약단위 단위당 거래액 x 거래환율(다만 미결제약정의 경우 일일청산가격 적용)
- 5) 환율적용은 미달러화이외의 기타통화표시거래의 경우 당해통화의 대미화 환산율(당해통화의 재정 환율(원화표시) / 미화의 매매기준율(원화표시))을 적용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4조의2제3항에 의한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다음달 10일 까지입니다.

<3-4-4>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채권 거래현황 (년 월중)

수신 : 한국은행 국제국장

참조 : 외환분석팀장

국제예탁 결제 기구명	매매 (체결 일자 ¹⁾)	결제 일자 1), 2)	장외/ 장내 구분 ³⁾	매매 구분 ⁴⁾	채권 종류 구분 ⁵⁾	종목명 ⁶⁾	종목 코드 ⁷⁾	액면 금액 (원)	결제 통화 ⁸⁾	결제 금액 ⁹⁾	투자자정보		
											적격외국금융기관명칭 ¹⁰⁾	투자자명	국적 ¹¹⁾

주 : 1) 'YYYYMMDD' 행태로 기재(예 : 20080102)

2) 채권매매대금의 결제일자

3) 1 : 장외(국내), 2 : 장내(거래소 거래), 3 : 장외(국외) - 국제예탁결제기구의 계좌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 상호간의 거래

4) 1 : 매입, 2 : 매도, 7 : 기타취득, 8 : 기타처분(만기상환 포함)

5) 11 : 국고채권, 12 : 국민주택1종채권, 13 : 국민주택2종채권, 14 : 양곡증권, 15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6 : 재정증권, 17 : 공공용지보상도로채권, 18 : 공공용지보상
철도채권, 30 : 기타 국채, 41 : 통화안정증권

6) 채권명을 기재(예 : 국고0525-2703)

7) KR표준코드를 기재(예 : KR1035037T34)

8) ISO 4217 코드를 기재(예 : KRW, USD, EUR, JPY, GBP 등)

9)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결제금액은 상장채권의 실제매매비용으로 취득/처분에 따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외)

10) 「소득세법」 제119조의 2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2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명칭을 기재

11) ISO 3166-1 코드를 기재(예 : KR, US, JP, GB 등)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9조제4항에 의한 보고로 제출시한은 익월 10일까지입니다.

<3-4-5>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현황
(년 월말 현재)

수신 : 한국은행 국제국장

참조 : 외환분석팀장

국제예탁결제기구명	채권종류구분 ¹⁾	종목명 ²⁾	종목코드 ³⁾	보유잔액(원) ⁴⁾	투자자정보	
					투자자명	국적 ⁵⁾

주 : 1) 11 : 국고채권, 12 : 국민주택1종채권, 13 : 국민주택2종채권, 14 : 양곡증권, 15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6 : 재정증권 , 17 : 공공용지보상도로채권, 18 : 공공용지보상
철도채권, 30 : 기타 국채, 41 : 통화안정증권

2) 채권명을 기재(예 : 국고0525-2703)

3) KR표준코드를 기재(예 : KR1035037T34)

4) 액면금액 기준

5) ISO 3166-1 코드를 기재(예 : KR, US, GB, JP 등)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9조제4항에 의한 보고로 제출시한은 익월 10일까지입니다.

<3-4-6>

보고기관명			작성기준일	
취급점포명			보고주기	월보
작성기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부서	직책	성명	전화번호
작성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증권 차입·대여 내역 (년 월 일)

1. 외화증권 차입·대여 내역

(단위 : 천미달러)

구분 ¹⁾	증권차입 (대여)일	차입(대여)대상 외화증권							증권대여 (차입)자	만기 일자
		증권 종류 ²⁾	증권명	표시 통화	수량 (A)	대차단가 (B) ³⁾	대차가액 (A*B) ³⁾	미달러 환산금액 ⁴⁾		

주 : 1) 차입, 대여로 구분

- 2) 1. 주식(출자지분 포함) 2. 국채, 지방채, 사채 3. 수익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유동화증권 5. 기타
3) 표시통화 기준금액으로 작성
4) 증권차입(대여)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

2. 외화증권 차입·대여 잔액

(단위 : 천미달러)

구분 ¹⁾	증권차입(대여)자	외화증권 차입(대여)현황			
		증권종류	대차금액 ²⁾	상환금액 ²⁾	잔액 ²⁾

주 : 1) 차입, 대여로 구분

- 2) 월말 매매기준율로 환산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제3항에 따른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거래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입니다.

<3-5-1> 삭제

<3-5-2>

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현황 (분기중)

가. 역외금융회사 관련 총 Exposure 현황

금 융 기 관 _____ 보고기준일 _____ 전 화 번 호 _____
 작성자 소속 _____ 작성자 직위 _____ 작성자 성명 _____
 확인자 소속 _____ 확인자 직위 _____ 확인자 성명 _____

1) 출자 현황

(단위 : 천미달러)

역외금융회사명	출자금(A) =B-C	총 누 계 출자액(B)	회수금액		출자금의 NAV(E) =A+F	평가손익 (F) =E-A	청산손익	비고
			원금회수 (C)	이익회수 (D)				
합 계								

2) 신용공여 현황

(가) 대출, 지급보증(LOC포함) 등 여신

(단위 : 천미달러, %)

역외금융회사명	여신형태	여신금액 (A)	건전성 분류	GAV/ 부채액	건전성분류 근거	충당금 적립액(B)	적립비율 =B/A
합 계							

(나) FRN 등 유가증권 매입

(단위 : 천미달러, %)

역외금융회사명	유가증권 종 류	평가전 장부가액	유가증권 평 가 액	평가손익 =B-A	건전성 분 류	GAV/ 부채액	건전성 분류근거	보유목적 분 류
합 계								

3) 분기중 역외금융회사 변동현황

설립 등 신규투자 내역			청산 등 투자회수 내역		
역외금융회사명	일자	비고	금융회사명	일자	비고

4)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신고수리일

역외금융회사명	한국은행 신고수리일자	기획재정부 신고수리일자	비고

나. 역외금융회사 현황

—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보고서를 첨부

<3-5-3>

신용카드등의 사용실적보고서 (년 /4분기중)

수 신 : 한국은행 국제국장

참 조 : 외환분석팀장

카드발행업자명 : (인)

(작성자 : 전화 :)

1. 거주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해외사용실적

(단위 : 천미달러)

카드명 ¹⁾	전분기말현재 연중누계		금분기중 사용실적 ²⁾			금분기말현재 연중누계	
	사용자수	금 액		사용자수	금 액	사용자수	금 액
			월중				
			월중				
			월중				
			분 기 계				

2. 비거주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국내사용실적

(단위 : 천미달러)

카드명 ¹⁾	전분기말현재 연중누계		금분기중 사용실적 ²⁾			금분기말현재 연중누계	
	사용자수	금 액		사용자수	금 액	사용자수	금 액
			월중				
			월중				
			월중				
			분 기 계				

주 : 1) 카드명은 VISA, MASTER, DINERS, AMEX, JCB 등(이상 신용카드), Maestro, Interlink 등(이상 직불카드)으로 구분 작성

2) 사용분기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분을 월별로 보고

3) 미 「달러」 이외의 이중통화에 대한 대미 「달러」 환산은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고시하는 환산율을 적용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0-6조에 의한 보고로서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우리은행에 대한 제출시한은 익분기 둘째달 10일까지입니다.

<3-5-4>

업무종류구분코드		작성기준일	
보고서종류		보고주기	월
작성기관	외국환은행		
	소 속	직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은행 부(점)		
확인자	은행 부(점)		

여행자카드(VTM) 사용 실적 보고서

(년 월중)

1. 여행자카드 판매 및 결제 실적

(단위 : 천미달러)

판매실적		결제실적		
건수	판매금액	지역	건수	결제금액
		합계		

2. 개인별 월간 1천달러 이상 여행자카드 결제 실적

(단위 : 천미달러)

성 명	카드번호	결제금액	비 고
합 계			

- <공통> 1) 여행자카드를 발행 또는 판매한 외국환은행이 작성
 2) 미 「달러」 이외의 이중통화에 대한 대미 「달러」 환산은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장이 고시하는 환산율을 적용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0-6조에 의한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익분기 첫째달 20일 까지입니다.

<3-5-5>

업무종류구분코드		작성기준일	
보고서종류		보고주기	분기보
작성기관	외국환은행		
	소 속	직책	성 명
작성자	은행 부(점)		
확인자	은행 부(점)		

내국통화 수출입 실적보고서

(분기중)

(단위 : 천원)

구분 점포별 ²⁾	전분기말 시재 ¹⁾					내국통화 수출액					내국통화 수입액					금분기말 시재 ¹⁾								
	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소 계	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소 계	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소 계	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소 계				
합 계																								

주 : 1) 분기말 현재 해외 현지법인 및 지점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시재금

2) 해외 현지법인 및 지점별

<3-5-6>

업무종류구분코드		작성기준일	
보고서종류		보고주기	분기보
작성기관	자금통합관리 신고자		
	소 속	직책	성 명
작성자	기관 부(팀)		
확인자	기관 부(팀)		전화번호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운영현황 보고서

(년 분기중)

1-1 해외 금융기관(해외외화예금)을 이용한 자금통합관리 운영현황

국내에서 해외로의 예치 및 처분(회수) 내역				해외 금융기관과 해외외화예금간의 예치 및 처분 내역					
일자 ¹⁾	거래내용 ³⁾	금액	USD환산금액 ⁴⁾	일자 ²⁾	거래내용 ⁵⁾	사유 ⁶⁾	금액	USD환산금액 ³⁾	거래금융기관

- 주 : 1)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한 해외외화예금으로의 송금 또는 처분(회수)일을 의미하며, 2005년7월1일의 경우 20050701로 기재
 2) 해외외화예금의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치 또는 해외금융기관으로의 인출일을 의미하며, 2005년7월1일의 경우 20050701로 기재
 3) 1 : 국내에서 해외외화예금으로의 송금, 2 : 해외외화예금의 처분에 따른 국내로의 회수
 4) 미 달러 이외 이중통화의 대미달러 환산은 보고서 작성기준일(매분기말)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고시하는 환산율을 적용
 5) 1 :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해외외화예금계좌로의 예치,
 2 : 해외 금융기관으로의 해외외화예금계좌 처분
 6) 1 : 원금, 2 : 이자, 3 : 수수료 등 기타

1-2. 국내 금융기관(국내외화예금)을 이용한 자금통합관리 운영현황

국내 외화예금의 예치 및 처분				국내 금융기관과 국내 외화예금간의 예치 및 처분 내역					
일자 ¹⁾	거래내용 ³⁾	금액	USD환산금액 ⁴⁾	일자 ²⁾	거래내용 ⁵⁾	사유 ⁶⁾	금액	USD환산금액 ³⁾	거래금융기관

- 주 : 1) 국내 외화예금으로의 예치 또는 인출일을 의미하며, 2005년 7월 1일의 경우 20050701로 기재
 2) 국내 외화예금의 국내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예치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으로의 인출일을 의미하며, 2005년 7월 1일의 경우 20050701로 기재
 3) 1 : 국내 외화예금으로의 예치, 2 : 국내 외화예금의 인출
 4) 미 달러 이외 이중통화의 대미달러 환산은 보고서 작성기준일(매분기말)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고시하는 환산율을 적용
 5) 1 :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예금계좌로의 예치,
 2 : 국내 금융기관으로의 외화예금계좌 처분
 6) 1 : 원금, 2 : 이자, 3 : 수수료 등 기타

2. 본·지사간 직접 자금통합관리 운영현황

가. 분기중 거래내용

일자 ¹⁾	대주	차주	대출/차입 금액	USD환산 금액 ²⁾	일자 ¹⁾	대주	차주	회수/상환금액		USD환산금액 ²⁾	
								원금	이자	원금	이자

- 주 : 1)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또는 영수일을 의미하며, 2005년 7월 1일의 경우 20050701로 기재
 2) 미 달러 이외 이중통화의 대미 달러 환산은 보고서 작성기준일(매분기말)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고시하는 환산율을 적용

나. 분기말 대출 및 차입잔액

대주	차주	분기말 잔액 ¹⁾	USD환산금액 ²⁾	대주	차주	분기말 잔액	USD환산금액 ²⁾

주 : 1) 실제 대출 및 차입 통화 기준

2) 미 달러 이외 이중통화의 대미 달러 환산은 보고서 작성기준일(매분기말)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고시하는 환산율을 적용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제5항에 의한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익분기 첫째달 20일까지입니다.

<3-7-2>

해 외 예 금 입 금 보 고 서

(년중)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¹⁾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작성기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 속	직 책	성 명
작성자	은행 부(점)		
확인자	은행 부(점)		

(단위 : 천미달러)

개설인명	입금일자	예금종류 ²⁾	예금기관명	계좌번호	입금액 ³⁾	입금재원 ⁴⁾	국가명 ⁵⁾

- 주 : 1) 개인인 경우 대표자란에 성명을 기재할 것.
 2) 정기예금, 보통예금(당좌예금 포함), 기타로 구분 기재할 것.
 3) 미화이외의 통화로 입금할 경우에는 미화금액을 병기할 것.
 4) 수출대금, 용역대금, 부동산처분대금, 외화증권처분대금, 예금(신탁)처분대금, 기타로 구분 기재할 것.
 5) 예금기관 소재 국가명을 기재할 것.

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에 의한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다음 년도 첫째달 말일까지입니다.

<3-7-3>

보고기관	개설인명			
	주소			
보고자	직위·성명		전화번호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은행 부(점)			

해외예금 및 신탁 잔액 보고서
(년중)

(단위 : 천미달러)

전년말잔액 (A)	연중 입금액(B)		연중 출금액(C)			연중이자 (D)	금년말잔액 (A+B-C+D)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국내송금	() ()	국내회수	() ()		() ()	
	해외입금		해외처분				
	수출대금		수입대금 지 급				
	외화증권 처 분		외화증권 취 득				
	예금·신 탁 처분		예금·신 탁 예치				
	기 타		기 타				
계	() ()	계	() ()				

주 : 해외예금 거래내역을 표기하되 해외신탁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내에 해외신탁 거래내역을 표기할 것

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한국은행총재 귀하

년 월 일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에 의한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익년도 첫째 달 말일까지입니다.

<3-8-2>

업무종류구분코드		작성기준일	
보고서종류		보고주기	월보
작성기관	증권대차자		
	소 속	직책	성 명
작성자	은행 부(점)		
확인자	은행 부(점)		

증권대차내역
(년 월 일)

1. 증권대차내역

(억원)

증권 대차자	증권 대여일	대 차 대 상 증 권					증권대여자	대차기간 ²⁾
		증권 종류 ¹⁾	증권명	수량(A)	대차 단가 (B)	대차 가액 (C=A*B)		

- 주 : 1) 1. 주식(출자지분 포함) 2. 국채, 지방채, 사채
 3. 수익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유동화증권 5. 기타
 2) 1. 대차기간 만료전의 경우 증권대차계약상의 대차기간
 2. 대차기간 만료 후 실제 대차기간

2. 증권대차 잔액

(억원)

증권대차자	증권대여자	증권대차현황		잔액
		대차금액	상환금액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제2항에 의한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까지입니다.

<3-8-3>

신용파생상품거래 내역 보고서

신 용 파 생 상 품 거 래 내 역 보 고 서		
보 고 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① (담당자 성명 :)
	주 소(소 재 지)	(전화번호 :) (E-mail :)
거 래 상 대 방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 소(소 재 지)	(전화번호 :) (E-mail :)
	업 종(직 업)	
거 래 내 용	거 래 종 류	<input type="checkbox"/> 신용연계채권(CLN) <input type="checkbox"/> 총수익교환스왑(TRS) <input type="checkbox"/> 신용스왑(CDS) <input type="checkbox"/> 신용옵션(CDO) <input type="checkbox"/>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DO) <input type="checkbox"/> 기타()
	거래상품의 명칭	* 거래상품의 고유명칭을 기재
	계약(명목) 금액	1. 계약통화기준 금액 : 2. 미달러화기준 환산금액 :
	거 래 일 자	
	만 기 일 자	
	거 래 목 적	<input type="checkbox"/> 위험회피목적 <input type="checkbox"/> 매매목적 <input type="checkbox"/> 보장매입 <input type="checkbox"/> 보장매도
	보장매입/보장매도 구분	* 위험회피 입장이면 보장매입, 위험인수 입장이면 보장매도
외국환거래규정 제2-10조의2 및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div> 한국은행총재 귀하		

210mm×297mm

- <첨부서류> 1. 신용파생상품거래 사유 설명서(A4 1매이내)
2. 신용파생상품거래 계약서

<3-8-4>

역외금융회사 투자금 회수 내역 보고서

역외금융회사명 :

보고기준일 :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가. 전체 투자금 회수 내역

투자자	일 자	기존 투자금액		회수금액	투자잔액		비고
		장부가액	시가평가액		장부가액	시가평가액	
합 계							

나. 투자 형태별 회수 내역

1) 출자금

투자자	일 자	기존 출자금액		회수금액	출자잔액		지분율	비고
		장부가액	시가평가액		장부가액	시가평가액		
합 계								

2) 여신(대출 및 보증)

투자자	일 자	여신형태	기존 여신금액		회수금액	여신잔액		비고
			장부가액	시가평가액		장부가액	시가평가액	
합 계								

3) 유가증권(FRN, ELN 등)

투자자	일 자	증권종류	기존 투자금액		회수금액	투자잔액		비고
			장부가액	시가평가액		장부가액	시가평가액	
합 계								

다. 한국은행 신고내역

신 고 인	신고일자	신고번호	신고내용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제8항에 의한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투자자금 회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4-8-1>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작성자 : 전화 :)

1. 부동산취득자명 :

2. 취득의 상대방

가. 상호 또는 성명 :

나. 주소 또는 소재지 :

3. 부동산 취득 내용

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

(1) 부동산취득 신고수리일 및 신고수리번호 :

(2) 부동산 취득 등기일 :

나. 부동산의 내용

(1) 내역

(가) 종 류 :

(나) 건 평 :

(다) 대 지 :

(2) 소재지

(3) 취득가액

(가) 건물가격 :

(나) 대지가격 :

(다) 부 대 비 :

(4) 부동산 관리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취득자와의 관계 :

4. 기 타

5. 첨부서류

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나. 취득부동산 천연색 사진

다. 부대비 영수증(부동산 취득세 납부증명 포함)

라. 기 타

※ 1) 본 보고서는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4-8-2>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

(작성자 : 전화 :)

1. 부동산취득자명 :

2. 처분목적 해외부동산의 내용

가. 부동산의 명세(종류, 수량, 가격 등) :

나. 부동산의 소재지 :

3. 해외부동산 처분내용

가. 부동산 처분내용 :

(1) 처분가격 :

(2) 기타지급비용 :

(3) 국내송금가능액 :

4. 첨부서류

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

다. 기타 지급비용 명세서 :

- ※ 1) 본 보고서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후 3개월 이내(다만, 부동산 처분후 3개월 이내에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시점에 제출할 것
- 2) 본 보고서 제출시 부동산 매각대금(국내 회수금액)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외환매입증명서(송금 처 명기)를 첨부할 것

<5-5-1>

해외지점 영업기금 지급 및 사용내역 보고서(분기보)
(년 분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	
해외지점명 및 주소			
	소 속	직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확인자			

1. 해외지점 재무상황¹⁾

(단위 : 천미달러)

총자산액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송금액 ²⁾	사업명 ³⁾	총 계약금액 ⁴⁾	매출액 ⁵⁾	영업기금 지급액 ⁶⁾ (A)	영업기금 사용액 ⁷⁾ (B)	영업기금 잔액 (A-B)	비고
		합 계						—

주 : 1) 분기말 기준

- 2) 본사가 해외지점 설치 이후 해외지점에 지급한 누계액
- 3) 해외지점이 외국 발주처와 계약한 해외공사 등의 사업명 기술
- 4) 해외지점이 외국 발주처와 계약한 해외공사 등의 계약 총금액
- 5) 해외공사 등의 계약에 따른 해외지점의 매출 누계액
- 6) 본사가 해외지점에 지급한 영업기금 누계액
- 7)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사용 누계액
- 8) 미 달러 이외의 이종통화의 경우 해당통화금액을 병기하고 대미 달러 환산은 보고서 작성기준일(매분기말)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외 고시하는 환산율을 적용

<5-7-1>

업무종류구분코드		작성기준일	
보고서종류		보고주기	연보
작성기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 속	직책	성 명
작성자	은행 부(점)		
확인자	은행 부(점)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영업자금도입보고서¹⁾
(연도중)

지사 ²⁾ 구분	구분 ³⁾	지사명	사업자번호	주요업종 ⁴⁾	본사 ⁵⁾ 소재국	영업자금 도입액 ⁶⁾ (천미달러)

- 주 : 1) 영업자금도입 유무에 관계없이 보고연도말 현재 지정거래하고 있는 모든 지사(연도중 폐쇄지사 포함)에 대하여 작성. 해당연도중 지정거래은행이 변경된 경우는 연도말 현재 지정거래은행이 보고
- 2) 1(지점), 2(사무소)
 -지 점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사 무 소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
- 3) 1(과거 기 설립), 2(해당 기간중 신규설립), 3(해당 기간중 폐쇄)
- 4) 지점인 경우 주요업종을 표시
 1(무역), 2(도소매), 3(건설), 4(금융·보험·증권), 5(기타 서비스), 6(기타)
- 5) 1(미국), 2(일본), 3(홍콩), 4(중국), 5(기타 아시아), 6(미주(미국제외)), 7(유럽), 8(기타)
- 6) 미 「달러」 이외의 이종통화에 대한 대미 「달러」 환산은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고시하는 환산율을 적용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34조제2항에 의한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익년도 2월말까지입니다.

<5-7-2>

해외 학교·병원 자금운영 현황
(연도중)

1. 학교 또는 병원에 관한 사항

가. 학교 또는 병원명 :

나. 학교 또는 병원 소재지

- 주 소 :

- 전화번호 :

다. 설립·운영자 : 직성명

전화번호

라. 설립일 :

마. 취득 부동산 명세

항 목	취득일	취득원가	규 모	용 도	비 고
토 지					
건 물					
기 타					
계					

2.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국외유출금액 (천미달러)

나. 국내입금금액 (천미달러)

다. 자금운영 내역(연중 운영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할 것)

3. 첨부서류 : 자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 1부. 끝.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제4항에 의한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익년도 첫째달 20일까지입니다.

2. 기관별 외환거래내역

2-1. 장내거래¹⁾

(단위 : 백만미달러, 원)

매입기관	매도기관	금 액	매매율	비 고 ²⁾

주 : 1) 거래별(현물환, 선물환 및 SWAP거래) 및 기일물별로 구분 작성
 2) 해당거래의 결제일 표시

2-2. 장외거래¹⁾

(단위 : 백만미달러, 원)

매입기관	매도기관	금 액	매매율	비 고 ²⁾

주 : 1) 「은행간 외환거래지침」의 장내거래 원칙에 의거 외국환중개회사의 장 앞으로 보고한 장외거래로서 거래별(현물환, 선물환 및 SWAP거래)로 구분 작성
 2) 해당거래의 결제일 표시

II. 외화자금거래 중개¹⁾

구 분	대여기관	차입기관	거래종류	금리(%)	금 액	적수금액	비 고
일일물 ²⁾							
주일물 ³⁾							
월일물 ⁴⁾							
1년물							
합 계							

- 주 : 1) 외화자금거래 중개통화별(미달러화, 일본엔화, 독일 마르크화, 영국 파운드화)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
 2) Overnight(O/N), Tomorrow Next(T/N), Spot Next(S/N) (3종)
 3) 1주일, 2주일, 3주일 (3종)
 4)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4종)

<6-8-1>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 한국은행총재

참조 : (외환시장팀)국제국장

제목 : 외국환중개거래 수수료 결정내용 보고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4-4조에 의거 외국환중개거래 수수료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종 류		수수료율	기준금액	비 고
외환매매	현물환		원	백만미달러
	선물환	1개월 이내	원	"
		1개월 초과	원	"
	스왑	1주일 이내	원	"
		1개월 이내	원	"
		1개월 초과	원	"
외화자금		%	거래금액 (적수)	

* 외국환중개회사에서 상기 보고양식 조정 가능

장 (인)

서 식 등

1. 허가 등
 - 1-1. 신청서 (공통서식 I)
 - 1-2. 신고서 (공통서식 II)
 - 1-3. 변경신청서
 - 1-4. 접수증
 - 1-5. 서약서

2. 삭제
 - 2-1. 삭제
 - 2-2-1. 삭제
 - 2-2-2. 삭제
 - 2-3. 삭제
 - 2-4. 삭제
 - 2-5. 삭제
 - 2-6. 삭제

3. 외국환증개회사
 - 3-1. 외국환증개회사 업무검사 실시 명령서
 - 3-2. 경위서
 - 3-3. 확인서
 - 3-4. 외국환증개회사 업무검사 결과 보고서

4.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 4-1. 종합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 4-2.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5. 외환거래 공동검사 (신설 2006.2)
 - 5-1. 외환거래 공동검사 실시 명령서
 - 5-2. 검사일지
 - 5-3. 검사원 보고서
 - 5-4. 확인서
 - 5-5. 질의서
 - 5-6. 시정조치 요구양식
 - 5-7.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

6. 보고대상자 검사 (신설 2006.2)
 - 6-1. 검사 실시 명령서
 - 6-2. 확인서
 - 6-3. 질의서

(1-2)

신 고 서 (공통서식 II)

() 신 고 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직 업)	
신 고 내 역		
외국환거래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1-3)

(_____) 변경 신청서

년 월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_____ (인)

주 소 또는 소 재 지 _____

전 화 번 호 _____

아래와 같이 (_____) 변경을 신청합니다.

1. 기 인허가 사항 가. 인허가번호 _____ 나. 일자 _____ 다. 금 액 _____
2. 변경내용 가. 변경전 : 나. 변경후 :
3. 변경사유(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위의 (_____) 변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함

허가번호	
허가일자	

한국은행총재

사본수신처 :

(1-4)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 . .

① 민원명	
②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③ 처리예정기간	
④ 처리주무부서	
⑤ 안내사항	

민원접수자 : (서명)
(전화 :)

한국은행 (부, 지점)

(1-5)

서약서

신고인은 ○○○(또는 ○○○의 대리인 ●●●)은 200X.X.X일 한국은행에 ○○거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신고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한 후 외국환거래법,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하였습니다.
-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 귀 행에 신고 이후 거래관계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와 사후 관리 자료 및 보고서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하겠습니다.

200X.X.X

신고인 ○○○(또는 ○○○의 대리인 ●●●)(인)

2. 삭제

(2-1) 삭제

(2-2-1) 삭제

(2-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3. 외국환중개회사

(3-1)

외국환중개회사 업무검사 실시 명령서

번호 :

외국환중개회사명	검 사 기 간	검 사 원
		<u>소 속</u> <u>직·성 명</u>

「외국환거래규정」 제10-7조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4-6조에 의거 상기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검사를 명령함.

년 월 일

한 국 은 행 총 재

(3-2)

검 사 일 지

(20 . .)

검사대상기관 :

검사항목	검사내용	비 고

검 사 원 (인)
검사반장 (인)

(3-3)

경 위 서
(년 월 일)

한국은행 국제국
검사원 귀하

소 속 (인)

직 위

성 명 (인)

본인은 아래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지적사항 :

내 용 :

(3-4)

확 인 서

제 목 :

요 지 :

관 련 자

<u>직 위</u>	<u>성 명</u>	<u>담 당 기 간</u>	<u>비 고</u>
------------	------------	----------------	------------

위 사 실 을 확 인 함 .

. . .

확 인 자
직 성 명

①

4.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 신청서

4-1. 종합포지션 별도한도 인정 신청서

종합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1. 상 호 (본점)	
2. 대 표 자 (본점)	
3. 소 재 지 (본점)	
4. 별도한도 신청대상	<input type="checkbox"/> 종합매입초과포지션 <input type="checkbox"/> 종합매각초과포지션
5. 별도한도 신청금액	천미달러(US천\$)
6. 별도한도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7. 별도한도 신청내역	— 붙 임 1
8. 별도한도 필요사유	— 붙 임 2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은행장 (인) 한국은행총재 귀하 (참조 : 국제국장)	

- 첨부서류 : 1. 최근 원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화 대차대조표
2. 결산보고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3.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헤지가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은지점의 경우)

(붙임 1)

종합포지션 별도한도 신청내역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미달러, 일)

		월*	~	월*
자기자본 내역	· 감기금 및 제적립금			
	· 이월이익잉여금			
	· 기타			
자본금헤지 거래 현황	· 헤지거래대상 자본금			
	(헤지대상 이월이익잉여금)			
	· 자본금헤지 종합포지션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종합포지션)			
	· 자본금헤지 선물환포지션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선물환포지션)				
종합포지션 운용현황	· 종합포지션 평잔			
	· 종합O/B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종합O/S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미달러, 일)

		월*	~	월*
자 기 자 본				
종합포지션	· 종합포지션 평잔			
운용현황	· 종합O/B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종합O/S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종합포지션	· 전월말 종합포지션			
변동내역	┌ 월중 대고객 매입			
	└ 월중 대고객 매각			
	┌ 월중 은행간 매입			
	└ 월중 은행간 매각			
	· 금월중 종합포지션 변동분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붙임 2)

종합포지션 별도한도 필요사유

4-2.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 신청서

<u>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u>	
1. 상 호 (본점)	
2. 대 표 자 (본점)	
3. 소 재 지 (본점)	
4. 별도한도 신청대상	<input type="checkbox"/>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 <input type="checkbox"/>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
5. 별도한도 신청금액	천미달러(US천\$)
6. 별도한도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 <input type="checkbox"/> 제도 도입전 거래 <input type="checkbox"/> 기타
7. 별도한도 신청내역	— 불 입 1
8. 별도한도 필요사유	— 불 입 2
<p>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은행장 (인)</p> <p>한국은행총재 귀하 (참조 : 국제국장)</p>	

- 첨부서류 : 1. 최근 원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화 대차대조표
 2. 결산보고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3.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헤지가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은지점의 경우)
 4.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전 거래로서 동 거래의 별도한도 인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제도 도입전 거래분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의 경우)

(붙임 1)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신청내역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미달러, 일)

		월*	~	월*
자기자본 내역	· 갑기금 및 제적립금			
	· 이월이익잉여금			
	· 기타			
자본금헤지 거래 현황	· 헤지거래대상 자본금			
	(헤지대상 이월이익잉여금)			
	· 자본금헤지 종합포지션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종합포지션)			
	· 자본금헤지 선물환포지션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선물환포지션)				
선물환포지션 운용현황	· 선물환포지션 평잔			
	· 선물환O/B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선물환O/S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제도 도입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미달러, 일)

		금액
자 기 자 본		
제도 도입전 거래 현황	- 제도 도입전 거래 매입액	
	- 제도 도입전 거래 매각액	
제도 도입전 거래 만기현황 ¹⁾	- 신청대상 제도 도입전거래 매입총액	
	· 1개월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3개월초과 6개월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6개월초과 1년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1년초과 2년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2년초과후 만기도래 예정액	
	- 신청대상 제도 도입전거래 매각총액	
	· 1개월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3개월초과 6개월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6개월초과 1년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1년초과 2년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2년초과후 만기도래 예정액	
선물환포지션 거래 내역	· 전월말 선물환포지션	
	· 금월중 선물환포지션 변동분	

주 : 1) 신청월 말일 기준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미달러, 일)

		월*	~	월*
자 기 자 본				
선물환포지션 운용현황	· 선물환포지션 평잔			
	· 선물환O/B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선물환O/S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선물환포지션	· 전월말 선물환포지션			
변동내역	┌ 월중 대고객 매입			
	└ 월중 대고객 매각			
	┌ 월중 은행간 매입			
	└ 월중 은행간 매각			
	· 금월중 선물환포지션 변동분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붙임 2)

선물환포지선 별도한도 필요사유

5. 외환거래 공동검사

(5-1)

외환거래 공동검사 실시 명령서

번 호 :

검사대상기관 등	검사기간	검사원 소속 및 성명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10-7조에 따라 상기 검사대상기관 및 거래당사자에 대한 검사를 명령함.

년 월 일

한국은행 총재

(5-2)

검 사 일 지

(200 . . .)

검사대상기관 :

검사항목	검사내용	비 고

검 사 원 (인)

검사반장 (인)

(5-3)

검사원 보고서

(200 . . .)

I. 검사대상기관 :

II. 검 사 내 용

1. 검사실시 개요(담당분야 및 검사기간)

2. 검사결과(검사 세부내용, 지적사항, 조치 필요사항)

3. 추후 검사시 유의사항

4. 기타 입증자료(붙임 활용)

III. 작성자(검 사 원) : (인)

IV. 확인자(검사반장) : (인)

(5-4)

확 인 서

제 목 :

확인내용(6하원칙에 따라 기술) :

위 사실을 확인함

200

확인자 직·성명 : (인)

(5-5)	질 의 서	
제 목 :		
질 의 사 항		
	은행(또는 거래당사자) 한국은행 검사원	귀하 (인)
아래 사항에 관하여까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답 변 사 항		
	한국은행 검사원 은행(또는 거래당사자) 직 · 성명	귀하 (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0		

주 : 1) 질의 또는 답변내용이 2매 이상인 경우 간인함
2) 답변내용의 입증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경우 답변서상 명기 후 별도 첨부

(5-6)



한 국 은 행

수신자 금융감독원장

제 목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에 대한 귀 원의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동 ○○○○에 대해 불임과 같이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붙 임 : 시정조치 요구내용 1부. 끝.

한국은행총재

협조자

시행 외환조사팀-@N (200 .) 접수 ()
우() / <http://www.bok.or.kr> / 직무권한 :
전화 /전송 / 비공개(5)

(6-1)

검사 실시 명령서

번호 :

검사 대상자	검사기간	검사원 소속 및 성명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7조에 따라 상기 검사대상기관 및 거래당사자에 대한 검사를 명령함.

년 월 일

한국은행 총재

(6-2)

확 인 서

제 목 :

확인내용(6하원칙에 따라 기술) :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인자 직·성명 :

(인)

(6-3)	질 의 서	
제 목 :		
질 의 사 항		
	은행(또는 거래당사자) 한국은행 검사원	귀하 (인)
아래 사항에 관하여까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답 변 사 항		
	한국은행 검사원 은행(또는 거래당사자) 직·성명	귀하 (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0		

주 : 1) 질의 또는 답변내용이 2매 이상인 경우 간인함
 2) 답변내용의 입증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경우 답변서상 명기 후 별도 첨부

